

C2007-47 | 2007. 11.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부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임 송 수 연구 위원
신 유 선 초청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임 송 수 연구위원
신 유 선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제1장, 제3-7장 집필
제2장

머 리 말

무역자유화가 촉진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였던 개도국들이 기대보다 못한 성과에 당황하고 있다. 특히, 가장 가난한 50개 국가로 구성된 최빈개도국(LDC)은 무역자유화가 경제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도하개발의제(DDA)로 명명한 새로운 무역라운드를 출범시킨 배경에는 개도국들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2005년에 열린 WTO 홍콩 각료회의는 선진 회원국들이 LDC에 대해 무관세·무쿼터(DFQF) 특혜 시장접근을 확대하도록 합의하였다. 2008년까지 또는 새로운 DDA 협정의 이행 시작 시점까지 LDC가 수출하는 모든 상품 또는 부득이하다면 상품의 97%까지 DFQF를 공여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도국은 단계별로 이를 도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LDC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중 12%와 비농산물 중 44%에 대해 무관세 특혜조치를 공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 12위 무역대국의 위상과 맞지 않으며 WTO 협상 대응 측면에서도 미흡한 게 사실이다. LDC에 대한 특혜적 시장접근 조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 아래 LDC에 대한 DFQF 확대 방안을 제시한 이 연구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 연구가 농산물과 같은 1차 산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LDC의 농업구조와 수출패턴을 밝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협상뿐만 아니라 국내 무역 제도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7.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 방법 4

제2장 LDC 농업구조와 무역동향

- 1. 농업구조 현황과 특징 5
- 2. LDC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 추이 22
- 3. 시사점 30

제3장 LDC 특혜 무역 조치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 1. WTO 논의 동향 35
- 2. UN의 논의 동향 39

제4장 주요국의 특혜무역제도

- 1. EU 40
- 2. 미국 43
- 3. 주요국 비교 45
- 4. 시사점 50

제5장 우리나라의 특혜무역제도 52

제6장 우리나라의 특혜무역제도 확대 영향

1. DFQF 품목의 선정 기준 58
2. 핵심기준 적용과 분석 60
3. 부가기준 적용과 분석 69

제7장 요약 및 결론 80

요약 84
Abstract 85
표·그림 차례 86
참고 문헌 89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수입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데 있음.

세부 목적은 ① 관련 LDC의 농업과 농산물 무역 현황 파악, ② WTO 및 주요국의 특혜무역 조치 현황과 확대 추이 분석, ③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파급 영향을 감안한 무관세·무쿼터 대상 농산물의 선정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WTO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1.2. 연구 필요성

WTO는 1996년에 싱가포르 각료회의를 통해 LDC 지원을 위한 이행 계획을

채택하고 LDC 수출품에 대한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추진해 옴.

2005년에 WTO 홍콩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개도국들이 2008년까지 또는 새로운 DDA 협정의 이행 시작 시점까지 LDC의 모든 상품 또는 부득이한 경우 상품의 97%까지 무관세·무쿼터를 부여한다는데 합의함.

- 1) 다만 개도국들은 무관세·무쿼터 시행기한이나 품목 범위 등을 신중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선진 개도국이며 주요 무역국으로서 우리나라도 LDC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고 있음.

- 1)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총 87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LDC 무관세·무쿼터 특혜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산물은 22개 품목임.
- 2) 정부는 LDC 특혜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농산물 등 일부 민감 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임.

EU와 기타 유럽 국가들은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도 이에 대한 검토와 부분적 시행을 단행함.

- 1) WTO 협상의 진전과 LDC와 긴밀한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선진국들과 여러 개도 회원국들은 LDC에 대한 특혜조치 부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무역 기조에 따라 LDC에 대한 특혜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면밀한 국내 영향분석 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국제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1.3. 연구내용과 방법

1.3.1. 연구내용

최빈개도국(LDC)의 농업구조와 무역 동향

- 1) LDC의 농업 현황
- 2) LDC 농산물의 무역 동향과 특성
- 3) 우리나라의 LDC 농산물 수입 동향

LDC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쟁점

- 1) WTO 논의 동향과 쟁점
- 2) UN 등 기타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쟁점

주요국의 무관세·무쿼터 특혜제도 운용 현황

- 1) EU, 미국 등의 선진국 제도
- 2) 기타 개도국

우리나라의 무관세·무쿼터 운용 현황과 한계

- 1) LDC 특혜관세제도의 현황
- 2) 기존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무관세·무쿼터 확대에 따른 수입변화 등 국내 영향 분석

- 1) 무관세·무쿼터 부여의 목표치 설정
- 2) 대상 농산물의 선정 기준과 분류
- 3) 대상 농산물의 수입변화 전망
- 4) 주요 품목별 국내영향 분석

2. 연구 방법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

- 1) WTO, UN 등 국제기구의 LDC 관련 연구 자료 분석
- 2) 인터넷(주요 기관지, 뉴스, 학술자료 등)과 KREI 전자도서관 정보(논문 등)를 활용함.
- 3) 2007년 KREI 기본과제인 “선진국형 농정으로서 전환을 위한 연구”와 “EU의 농업구조 변화와 농정개혁 연구”의 외국농정 관련연구의 정보를 공유함.

국제회의 동향 파악

- 1) WTO와 UN 등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파악
- 2) 정부에 대한 협상 관련 지원

모형과 통계분석을 통한 국내 영향 평가

- 1) 수입 자료를 활용한 수입확대 가능성 계측

현지 조사

- 1) 국내 파급 영향 분석을 위한 생산자나 단체 방문 조사

제 2 장

LDC 농업구조와 무역 동향

1. 농업구조 현황과 특징

최빈개도국(LDC)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개도국이나 선진국보다 높으며, 농업구조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1) 2000~03년에 LDC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3%로 다른 개도국 11%나 선진국 2%보다 높았음.

LDC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평균 36%에서 2004년에 28%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임<표 2-1>.

- 1) 특히 적도 기니에서 농업 비중은 1990년에 62%에서 2003년에 7%로 급감함.
- 2) 앙골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라오, 말라위, 네팔 등 LDC 대부분도 농업 비중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음.

반대로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감비아 등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농업 비중은 오히려 증가함.

- 1) 부르키나파소에서 농업 비중은 1990년에 28%에서 2004년 31%로 증가하였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48%에서 61%, 차드는 29%에서 61%로 늘어남.

LDC에서 농업 비중의 감소율은 다른 개도국보다 낮음.

- 1) 개도국의 농업 비중은 1990년에 평균 15%에서 2004년에 11%로 약 27% 감소하였고 LDC는 같은 기간에 22% 하락함.

표 2-1. LDC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국 가	GDP 대비 농업 비중(%)		증감률 (%)
		1990	2004	
1	아프가니스탄	-	52 ¹⁾	-
2	앙골라	18	9 ²⁾	-50
3	방글라데시	30	21	-30
4	베냉	36	36	-
5	부탄	43	33 ²⁾	-23
6	부르키나파소	28	31	11
7	부룬디	56	51	-9
8	캄보디아	47 ³⁾	36	-23
9	카보베르데	14	7	-50
10	중앙아프리카	48	61 ²⁾	27
11	차드	29	61	110
12	콩고	39	41 ²⁾	5
13	코모로이슬람연방	30	58 ¹⁾	93
14	지부티	3	4 ⁴⁾	33
15	적도 기니	62	7 ²⁾	-89
16	에리트레아	22 ³⁾	15	-32
17	에티오피아	49	46	-6
18	감비아	29	32	10
19	기니	24	25	4
20	기니비사우	61	71	16
21	아이티	33 ⁵⁾	28 ¹⁾	-15
22	키리바시	19	14 ¹⁾	-26
23	라오	61	49 ²⁾	-20
24	레소토	24	16	-33
25	라이베리아	-	-	-
26	마다가스카르	29	29	-

(표 2-1 계속)

	국 가	GDP 대비 농업 비중(%)		증감률 (%)
		1990	2004	
27	말라위	45	39	-13
28	몰디브	-	-	-
29	말리	46	38 ²⁾	-17
30	모리타니	30	19	-37
31	모잠비크	37	26 ²⁾	-30
32	미얀마	57	57 ⁴⁾	-
33	네팔	52	40	-23
34	니제르	35	40 ²⁾	14
35	르완다	33	42 ²⁾	27
36	사모아	-	-	-
37	상투메 프린시페	28	16	-43
38	세네갈	20	17	-15
39	시에라리온	32	53	66
40	솔로몬군도	-	-	-
41	소말리아	65	-	-
42	수단	43 ⁵⁾	39 ¹⁾	-9
43	티모르	41 ⁶⁾	26 ⁴⁾	-37
44	토고	34	41	21
45	투발루	-	-	-
46	우간다	57	32	-44
47	탄자니아	46	45 ²⁾	-2
48	바누아투	21	15 ⁴⁾	-29
49	예멘	24	15	-38
50	잠비아	21	21	-
	LDC 전체	36	28 ²⁾	-22
	개도국	15	11	-27

주: 1) 2002년, 2) 2003년, 3) 1993년, 4) 2000년, 5) 1996년, 6) 1998년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표 2-2 계속)

	국 가	농업		산업		제조업		서비스	
		'80~'83	'00~'03	'80~'83	'00~'03	'80~'83	'00~'03	'80~'83	'00~'03
26	마다가스카르	27	30	14	14	13	12	58	56
27	말라위	30	37	20	16	16	11	50	47
28	몰디브	-	-	-	-	-	-	-	-
29	말리	44	41	14	23	4	3	42	36
30	모리타니	24	20	29	30	18	9	47	50
31	모잠비크	32	27	24	28		15	44	45
32	미얀마	-	-	-	-	-	-	-	-
33	네팔	54	42	13	22	4	9	34	37
34	니제르	32	39	20	17	7	7	48	44
35	르완다	35	43	30	21	22	11	35	37
36	사모아	-	14	-	26	-	16	-	60
37	상투메 프린시페	-	20	-	17	-	4	-	63
38	세네갈	23	18	17	21	11	13	60	61
39	시에라리온	54	47	29	34			17	19
40	솔로몬군도	-	-	-	-	-	-	-	-
41	소말리아	-	-	-	-	-	-	-	-
42	수단	36	41	20	20	11	8	44	39
43	티모르	-	-	-	-	-	-	-	-
44	토고	23	35	21	19	7	9	57	46
45	투발루	-	-	-	-	-	-	-	-
46	우간다	51	36	11	21	5	10	37	43
47	탄자니아	-	45	-	16	-	8	-	39
48	바누아투	19	15	12	10	3	4	69	75
49	예멘	-	14	-	46	-	5	-	39
50	잠비아	15	21	36	27	8	12	49	52
	LDC 전체	37	33	23	26	9	11	39	42

자료 : UNCTAD(<http://www.unctad.org>)

전체 노동인구에서 농업의 비중은 1990년에 평균 76%에서 2002년에 69%로 9% 감소하였음<표 2-3>.

- 1) 같은 기간에 개도국이 평균 61%에서 51%로 16%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감소폭이 낮음.
- 2) 특히 몰디브가 1990~02년에 33%에서 21%로 36%가 하락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 3) 사모아, 투발루, 예멘도 20% 이상 감소함.

표 2-3. LDC의 전체 노동인구에서 농업의 비중

	국 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농업비중(%)		증감률 (%)
		1990	2002	
1	아프가니스탄	70	66	-5.7
2	앙골라	75	71	-5.3
3	방글라데시	65	54	-16.9
4	베냉	64	52	-18.8
5	부탄	94	94	-
6	부르키나파소	92	92	-
7	부룬디	92	90	-2.2
8	캄보디아	74	69	-6.8
9	카보베르데	31	22	-29.0
10	중앙아프리카	80	71	-11.3
11	차드	83	73	-12.0
12	콩고	78	73	-6.4
13	코모로이슬람연방	68	62	-8.8
14	지부티	82	78	-4.9
15	적도 기니	75	69	-8.0
16	에리트레아	80	77	-3.8
17	에티오피아	86	82	-4.7
18	감비아	82	78	-4.9
19	기니	87	83	-4.6
20	기니비사우	85	82	-3.5
21	아이티	68	61	-10.3
22	키리바시	30	26	-13.3
23	라오	78	76	-2.6

(표 2-3 계속)

	국 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농업비중(%)		증감률 (%)
		1990	2002	
24	레소토	41	39	-4.9
25	라이베리아	72	67	-6.9
26	마다가스카르	78	73	-6.4
27	말라위	87	82	-5.7
28	몰디브	33	21	-36.4
29	말리	86	80	-7.0
30	모리타니	55	52	-5.5
31	모잠비크	83	81	-2.4
32	미얀마	73	70	-4.1
33	네팔	94	93	-1.1
34	니제르	90	87	-3.3
35	르완다	92	90	-2.2
36	사모아	42	33	-21.4
37	상투메 프린시페	71	63	-11.3
38	세네갈	77	73	-5.2
39	시에라리온	67	61	-9.0
40	솔로몬군도	77	72	-6.5
41	소말리아	75	70	-6.7
42	수단	69	59	-14.5
43	티모르	-	-	
44	토고	66	59	-10.6
45	투발루	33	25	-24.2
46	우간다	85	79	-7.1
47	탄자니아	84	80	-4.8
48	바누아투	43	35	-18.6
49	예멘	60	48	-20.0
50	잠비아	74	68	-8.1
	LDC 전체	76	69	-9.2
	개도국	61	51	-16.4

자료 : UNCTAD(<http://www.unctad.org>)

전체 농업생산과 1인당 농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표 2-4>와 같음.

- 1) 전체 농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94년에 평균 1.6%에서 2000~04년에 2.3%로 늘어남.
- 2) 예를 들어, 부르키나파소와 지부티의 농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5.8%에서 8.6%와 -4.9%에서 2.9%로 증가함.
- 3) 반대로 앙골라와 감비아에서 농업생산은 각각 4.9%에서 2.5%와 0.9%에서 -11.0%로 줄었음.

LDC에서 전체 농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 상승은 같은 기간에 개도국이 평균 3.7%에서 3.2%로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임.

표 2-4. LDC의 농업 생산 추이

	국 가	전체 농업생산 연평균 증가율(%)					1인당 농업생산 연평균 증가율(%)				
		'90~'94	'00~'04	2002	2003	2004	'90~'94	'00~'04	2002	2003	2004
1	아프가니스탄	-	-	-	-	-	-	-	-	-	-
2	앙골라	4.9	2.5	0.2	2.0	-1.1	1.8	-0.7	-3.0	-1.3	-4.3
3	방글라데시	0.1	0.9	2.2	3.0	-1.3	-2.3	-1.2	0.2	0.9	-3.3
4	베냉	6.3	7.5	9.3	15.2	2.9	2.8	4.7	6.3	12.2	0.2
5	부탄	1.8	0.8	-6.6	5.1	-1.7	0.5	-2.2	-9.5	2.1	-4.4
6	부르키나파소	5.8	8.6	3.7	6.3	0.7	2.8	5.5	0.6	3.2	-2.1
7	부룬디	-2.2	2.1	4.7	-1.7	-2.7	-3.8	-1.0	1.6	-4.9	-6.0
8	캄보디아	0.7	2.2	-4.3	15.6	-7.5	-2.7	-0.2	-6.6	12.9	-9.7
9	카보베르데	0.4	-1.4	-5.8	3.0	-2.3	-1.9	-3.3	-7.7	0.9	-4.3
10	중앙아프리카	2.5	0.3	0.0	-2.1	1.8	-0.2	-1.0	-1.3	-3.2	0.5
11	차드	1.5	3.9	-1.1	-0.3	5.7	-1.3	0.9	-4.1	-3.1	2.6
12	콩고	2.7	1.1	-0.5	2.9	0.2	-0.3	-1.7	-3.3	0.1	-2.6
13	코모로이슬람연방	1.3	-0.6	-0.9	0.6	-0.7	-2.3	-3.4	-3.6	-2.4	-3.8
14	지부티	-4.9	2.9	3.3	6.4	0.0	-6.2	1.2	1.4	4.9	-1.3
15	적도 기니	-2.4	-1.7	-5.3	1.2	0.0	-4.8	-4.3	-7.8	-1.5	-2.5
16	에리트레아	35.8	-2.5	-22.1	13.7	-0.8	35.3	-6.0	-24.9	9.6	-4.4
17	에티오피아	1.1	2.6	2.6	-2.8	4.3	-1.9	0.1	0.1	-5.2	1.8
18	감비아	0.9	-11.0	-40.1	9.8	-3.8	-2.6	-13.4	-41.7	6.8	-6.1
19	기니	5.0	2.9	1.4	3.3	2.4	1.2	1.3	-0.1	1.9	0.8

(표 2-4 계속)

	국 가	전체 농업생산 연평균 증가율(%)					1인당 농업생산 연평균 증가율(%)				
		'90~'94	'00~'04	2002	2003	2004	'90~'94	'00~'04	2002	2003	2004
20	기니비사우	1.4	1.9	-1.8	2.5	5.2	-1.8	-1.1	-4.7	-0.6	2.2
21	아이티	-2.0	-0.1	2.4	1.7	-2.7	-3.6	-1.4	1.1	0.3	-3.9
22	키리바시	4.8	2.2	1.6	0.5	6.2	3.1	0.6	-0.7	-0.7	5.1
23	라오	2.0	2.3	8.4	-3.9	4.1	-0.6	0.0	6.0	-6.1	1.7
24	레소토	3.4	0.4	-5.7	-1.2	9.0	2.0	0.2	-6.1	-1.3	9.0
25	라이베리아	-5.3	-0.6	-2.5	0.1	2.4	-4.4	-4.7	-6.7	-3.7	-1.1
26	마다가스카르	1.1	1.5	-2.0	1.9	8.0	-1.7	-1.3	-4.8	-0.9	4.9
27	말라위	-0.8	-3.9	-25.6	9.9	8.5	-1.9	-5.8	-27.1	7.8	6.4
28	몰디브	3.7	3.1	9.4	0.2	1.0	0.7	0.1	6.2	-2.6	-2.1
29	말리	2.6	6.1	-6.6	15.6	-1.1	-0.2	3.0	-9.2	12.1	-4.2
30	모리타니	-1.1	2.1	5.6	2.4	0.5	-3.5	-0.9	2.5	-0.7	-2.5
31	모잠비크	-3.4	2.7	1.8	3.1	0.0	-6.7	0.9	0.0	1.2	-1.6
32	미얀마	6.7	3.9	2.9	6.6	-2.7	4.9	2.5	1.5	5.3	-4.0
33	네팔	1.0	2.7	2.8	4.9	-0.7	-1.4	0.5	0.5	2.7	-3.0
34	니제르	3.0	5.9	2.5	7.8	-1.4	-0.3	2.2	-1.2	4.0	-4.9
35	르완다	-12.9	3.0	24.7	-9.1	0.0	-6.8	0.7	21.6	-10.4	-1.2
36	사모아	-3.5	0.6	-0.4	1.7	0.0	-4.1	-0.3	-1.0	0.5	-1.1
37	상투메 프린시페	9.8	2.2	1.2	4.5	0.9	7.1	-0.4	-1.4	2.0	-1.6
38	세네갈	1.5	-5.0	-35.7	36.2	-0.8	-1.0	-7.3	-37.1	32.9	-3.2
39	시에라리온	-1.1	4.8	4.8	5.4	-0.9	-1.2	0.7	0.5	1.0	-4.6
40	솔로몬군도	3.0	8.5	2.1	4.6	42.3	-0.2	5.4	-0.8	1.5	38.3
41	소말리아	-	-	-	-	-	-	-	-	-	-
42	수단	8.2	2.8	-3.2	9.6	-3.6	5.7	0.6	-5.4	7.3	-5.7
43	티모르	5.4	3.1	7.4	-0.6	3.6	2.1	-1.0	3.5	-5.6	-1.8
44	토고	4.0	3.6	10.8	-0.5	1.4	1.8	1.2	8.1	-2.6	-0.8
45	투발루	-	-	-	-	-	-	-	-	-	-
46	우간다	2.1	2.2	4.1	-2.9	3.7	-1.0	-1.0	0.9	-6.0	0.3
47	탄자니아	-1.0	1.6	1.6	-0.8	3.8	-4.3	-0.4	-0.4	-2.7	1.8
48	바누아투	-2.7	-0.6	-9.3	4.7	3.5	-5.4	-3.0	-11.5	2.2	1.0
49	예멘	4.3	2.1	-0.7	-0.7	4.6	-0.7	-1.5	-4.2	-4.1	0.9
50	잠비아	3.6	2.5	0.3	11.0	0.0	0.8	1.2	-0.9	9.8	-1.1
	LDC 전체	1.6	2.3	1.2	4.0	-0.2	-	-	-	-	-
	개도국	3.7	3.2	2.7	4.1	3.1	1.8	1.6	1.2	2.5	1.6

자료 : UNCTAD(<http://www.unctad.org>)

전체 식량생산과 1인당 순 식량생산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표 2-5>와 같음.

- 1) 전체 식량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94년에 평균 1.7%에서 2000~04년 평균 2.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전체 농업생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치임.
- 2) 특히 지부티와 르완다는 같은 기간에 각각 -4.9%에서 2.9%로, -12.5%에서 3.1%로 증가함.

LDC에서 식량생산은 농업생산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개도국은 같은 기간에 평균 4.0%에서 3.1%로 감소 추세를 나타냄.

식량생산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LDC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앙골라와 감비아는 같은 기간에 각각 0.0%에서 0.9%로, 0.5%에서 -11.1%로 감소함.

표 2-5. LDC의 식량생산 추이

	국 가	전체 식량생산 연평균 증가율(%)					1인당 순 식량생산 연평균 증가율(%)				
		'90~'94	'00~'04	2002	2003	2004	'90~'94	'00~'04	2002	2003	2004
1	아프가니스탄	-	-	-	-	-	-	-	-	-	-
2	앙골라	5.2	2.7	0.4	2.0	-1.1	2.0	-0.6	-2.8	-1.3	-4.3
3	방글라데시	0.0	0.9	2.5	3.0	-1.4	-2.4	-1.2	0.4	1.0	-3.4
4	베냉	4.2	9.1	6.1	23.0	3.2	0.8	6.2	3.3	19.7	0.5
5	부탄	1.8	0.8	-6.6	5.1	-1.7	0.5	-2.2	-9.5	2.1	-4.6
6	부르키나파소	7.2	6.8	-1.5	7.2	-4.6	4.2	3.7	-4.3	4.0	-7.3
7	부룬디	-2.4	2.1	2.5	0.2	-2.8	-4.0	-1.0	-0.4	-3.1	-6.2
8	캄보디아	0.5	2.2	-4.2	15.0	-7.7	-2.9	-0.2	-6.4	12.3	-9.9
9	카보베르데	0.4	-1.4	-5.8	3.0	-2.3	-1.9	-3.3	-7.7	0.9	-4.3
10	중앙아프리카	3.2	1.3	1.3	-0.2	1.9	0.4	0.0	0.0	-1.4	0.6
11	차드	2.6	3.9	-1.4	3.3	1.1	-0.4	0.9	-4.3	0.3	-2.0
12	콩고	2.7	1.1	-0.5	2.9	0.2	-0.3	-1.7	-3.3	0.1	-2.6
13	코모로이슬람연방	1.5	-0.6	-1.5	1.0	-0.5	-2.2	-3.4	-4.3	-2.0	-3.5
14	지부티	-4.9	2.9	3.3	6.4	0.0	-6.2	1.2	1.4	4.9	-1.3
15	적도 기니	-1.8	-1.9	-5.9	1.3	0.0	-4.2	-4.5	-8.5	-1.4	-2.6
16	에리트레아	36.4	-2.5	-22.2	13.9	-0.8	35.7	-6.0	-25.1	9.7	-4.4

(표 2-5 계속)

	국 가	전체 식량생산 연평균 증가율(%)					1인당 순 식량생산 연평균 증가율(%)				
		'90~'94	'00~'04	2002	2003	2004	'90~'94	'00~'04	2002	2003	2004
17	에티오피아	0.3	2.6	3.0	-2.9	3.6	-2.9	0.1	0.4	-5.2	1.1
18	감비아	0.5	-11.1	-40.2	9.8	-3.8	-2.9	-13.5	-41.8	6.8	-6.1
19	기니	5.0	3.8	3.9	3.5	2.5	1.2	2.2	2.5	2.0	0.9
20	기니비사우	1.6	1.8	-1.9	2.5	5.4	-1.6	-1.1	-4.8	-0.5	2.2
21	아이티	-1.9	-0.1	2.4	1.7	-2.7	-3.5	-1.4	1.0	0.4	-3.9
22	키리바시	4.8	2.2	1.6	0.5	6.2	3.1	0.6	-0.7	-0.7	5.1
23	라오	3.4	3.2	9.2	-2.7	2.6	0.8	0.9	6.7	-4.9	0.4
24	레소토	2.5	0.4	-6.0	-1.2	9.3	1.1	0.2	-6.2	-1.4	9.4
25	라이베리아	-4.9	-1.5	-4.0	-0.2	1.8	-4.1	-5.6	-8.2	-4.0	-1.7
26	마다가스카르	1.3	1.5	-1.4	1.5	8.0	-1.5	-1.3	-4.1	-1.4	5.1
27	말라위	-1.1	-3.5	-28.1	12.0	9.3	-2.2	-5.4	-29.6	10.0	7.2
28	몰디브	3.7	3.1	9.4	0.2	1.0	0.7	0.1	6.2	-2.6	-2.1
29	말리	2.8	3.8	-1.4	9.4	0.9	0.1	0.7	-4.3	6.2	-2.2
30	모리타니	-1.1	2.1	5.6	2.4	0.5	-3.5	-0.9	2.5	-0.7	-2.5
31	모잠비크	-3.8	2.3	1.7	2.9	0.0	-7.1	0.5	-0.1	1.1	-1.6
32	미얀마	6.8	4.0	3.0	6.6	-2.9	5.0	2.6	1.5	5.4	-4.0
33	네팔	1.0	2.7	2.9	4.9	-0.9	-1.3	0.5	0.6	2.6	-3.0
34	니제르	2.9	6.3	2.4	8.7	-1.3	-0.4	2.5	-1.2	4.8	-4.8
35	르완다	-12.5	3.1	25.9	-9.1	-0.3	-6.3	0.8	22.8	-10.4	-1.4
36	사모아	-3.5	0.6	-0.4	1.7	0.0	-4.1	-0.3	-1.0	0.5	-1.1
37	상투메 프린시페	9.8	2.2	1.3	4.5	0.9	7.2	-0.4	-1.4	1.9	-1.5
38	세네갈	1.7	-5.6	-36.3	35.4	-0.9	-0.9	-7.9	-37.7	32.3	-3.3
39	시에라리온	-1.3	4.9	5.0	5.4	-1.0	-1.4	0.8	0.9	1.0	-4.7
40	솔로몬군도	3.0	8.5	2.1	4.6	42.5	-0.2	5.4	-0.8	1.5	38.4
41	소말리아	-	-	-	-	-	-	-	-	-	-
42	수단	9.4	2.7	-2.9	9.4	-4.1	6.9	0.4	-5.1	7.1	-6.1
43	티모르	5.8	3.4	9.3	-0.6	4.2	2.4	-0.6	5.1	-5.6	-1.1
44	토고	3.8	2.1	7.3	0.1	-0.1	1.6	-0.3	4.7	-2.1	-2.3
45	투발루	-	-	-	-	-	-	-	-	-	-
46	우간다	1.7	2.0	3.6	-2.4	3.3	1.4	-1.2	0.4	-5.5	-0.1
47	탄자니아	-0.9	1.2	2.9	-0.5	1.1	-4.2	-0.7	0.9	-2.4	-0.7
48	바누아투	-2.7	-0.6	-9.3	4.7	3.6	-5.4	-3.0	-11.5	2.2	1.1
49	예멘	4.2	2.0	-0.7	-0.8	4.8	-0.7	-0.5	-4.2	-4.3	1.3
50	잠비아	3.5	2.7	0.2	12.3	0.0	0.8	1.4	-1.0	11.0	-1.1
	LDC 전체	1.7	2.3	1.4	4.1	-0.6	-	-	-	-	-
	개도국	4.0	3.1	2.8	4.3	2.4	2.1	1.6	1.3	2.7	0.9

자료 : UNCTAD(<http://www.unctad.org>)

농산물 주요 품목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음.

- 1) 2004년에 커피, 차, 설탕과 담배의 가격 지수는 2000년 수준보다 낮아져 실질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코코아, 어분, 면화, 활엽수 목재 등 가격 지수는 2000년 수준과 견주어 상승함.

표 2-6. LDC의 농산물 주요 품목 가격지수

품 목	2001	2002	2003	2004
식품 전체	100	103	107	121
커피(Arabicas)	72	72	74	93
커피(Robustas)	66	72	88	86
코코아	123	200	198	174
차	80	72	78	80
설탕	106	84	87	88
어분	118	147	148	157
농산물	96	94	112	123
면화	81	78	107	104
활엽수 목재	98	105	118	136
담배	100	92	89	92

주: 2000=100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노동 인구 측면에서 전체는 1990년에 2억 2,178만 명에서 2004년에 3억 1,721만 명으로 43%가 증가하였으나 농업 노동인구는 1억 8,332만 명에서 2억 3,637만 명으로 29%가 늘어남<표 2-7>.

표 2-7. LDC의 농업노동인구 추이

연도	전체 노동인구 (천명)	여성노동인구 (%)	농업노동인구 (천명)	여성 농업노동인구(%)
1990	221,777	43.0	183,324	47.4
2000	285,699	42.4	220,425	48.4
2004	317,211	42.2	236,371	48.6
2006	334,650	-	-	-

자료 : UNCTD(<http://www.unctad.org/statistics/handbook>)

전체 노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 43%에서 2004년에 42%로 감소하였으나 농업에서 그 비율은 47%에서 2004년 49%로 늘어남.

농업 노동 인구 비율과 농업 노동 생산지수를 나타내면 <표 2-8>과 같음.

- 1) 전체 노동인구에서 농업노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83년에 평균 64%에서 2000~03년에 52%로 감소함.
- 2) 개도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평균 7%에서 3%로 감소함.

농업 노동 생산지수는 LDC와 개도국 모두 증가함.

표 2-8. LDC의 농업 노동 인구와 농업 노동 생산성

	국 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농업노동인구 비율(%)		농업노동 생산지수	
		1980~83	2000~03	1980~83	2000~03
1	아프가니스탄	72	66	239	251
2	앙골라	76	71	-	148
3	방글라데시	71	54	223	307
4	베냉	67	53	264	572
5	부탄	94	94	127	185
6	부르키나파소	92	92	128	165
7	부룬디	93	90	118	104
8	캄보디아	75	70	-	294
9	카보베르데	36	22	-	1630
10	중앙아프리카	84	71	281	400
11	차드	87	74	151	214
12	콩고	80	73	305	367
13	코모로이슬람연방	71	62	221	198
14	지부티	84	78	-	69
15	적도 기니	78	70	-	712
16	에리트레아	-	77	-	63
17	에티오피아	-	82	-	123
18	감비아	84	79	290	233
19	기니	90	83	-	221
20	기니비사우	87	82	185	249

(표 2-8 계속)

	국 가	전체 노동인구에서 농업노동인구 비율(%)		농업노동 생산지수	
		1980~83	2000~03	1980~83	2000~03
21	아이티	70	62	803	473
22	키리바시	35	27	1125	727
23	라오	79	76	-	457
24	레소토	41	39	452	509
25	라이베리아	76	67	-	-
26	마다가스카르	81	74	181	177
27	말라위	87	82	89	122
28	몰디브	48	21	-	-
29	말리	88	80	172	223
30	모리타니	69	53	207	283
31	모잠비크	84	81	-	133
32	미얀마	75	70	-	-
33	네팔	94	93	163	207
34	니제르	91	87	189	168
35	르완다	93	91	220	220
36	사모아	48	34	-	1729
37	상투메 프린시페	74	63	-	223
38	세네갈	80	73	275	264
39	시에라리온	69	61	532	282
40	솔로몬군도	79	73	-	-
41	소말리아	78	70	-	-
42	수단	72	60	378	680
43	티모르	85	81	-	263
44	토고	68	59	275	402
45	투발루	87	79	202	228
46	우간다	86	80	-	278
47	탄자니아	48	36	1000	1096
48	바누아투	69	49	-	495
49	예멘	76	68	185	207
50	잠비아	79	70	239	273
	LDC 전체	64	52	408	599
	개도국	7	3	11608	28013

주: 1)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가 2,000달러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노동 생산성은 부가가치와 경제활동 인구간의 비율임.

2) 노동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를 뜻함.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전체 농지 이용률은 1994년에 평균 68%이고, 지역별로 비교하면 아시아가 86%로 아프리카의 49%보다 높음<표 2-9>.

2000~03년에 전체 농지 중 관개지의 비율은 평균 9.3%를 기록함.

농업인 1인당 농지 면적은 1980~83년에 평균 1.2ha에서 2000~03년에 1.1ha로 감소함.

- 1)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평균 1.1ha에서 1.0ha로 약 8% 감소하였고 아시아에서는 0.7ha에서 0.5ha로 26%가량 줄었음.

비료 소비량은 1980~83년에 ha당 평균 5.7kg에서 2000~02년에 13.1kg으로 늘어남.

- 1) 특히 아시아 지역의 소비량이 ha당 12.5kg에서 28.7kg으로 크게 증가함.

표 2-9. LDC의 농지이용 현황

국 가	농지 이용률 (%)	관개지 비율 (%)	농지비율 (농업인 1인당 ha)			비료소비량 (ha당 kg)	
	1994	'00~'03	'80~'83	'00~'03	증감률(%)	'80~'83	'00~'02
아프리카 LDC	48.7	0.8	1.1	1.0	-7.6	4.3	6.3
앙골라	6	0.1	1.2	0.8	-33.3	3.0	0.1
베냉	26	0.4	1.4	1.8	28.6	1.9	13.9
부키나파소	24	0.2	0.8	0.8	0.0	3.3	3.0
부룬디	130	0.9	0.6	0.4	-33.3	1.3	2.4
중앙아프리카	6	0.0	1.9	1.6	-15.8	0.5	0.3
차드	15	0.1	1.6	1.3	-18.8	1.3	4.9
콩고	3	0.0	0.8	0.6	-25.0	1.1	0.6
지부티	-	0.1	0.0	0.0	0.0	-	-
적도 기니	-	-	2.7	1.7	-37.0	0.1	0.0
에리트레아	201	0.3	-	0.4	-	-	11.8
에티오피아	40	0.9	-	0.5	-	-	13.5
감비아	22	0.3	0.6	0.6	0.0	11.4	2.6
기니	20	0.8	0.5	0.5	0.0	0.4	1.9

(표 2-9 계속)

국 가	농지 이용률 (%)	관개지 비율 (%)	농지비율 (농업인 1인당 ha)			비료소비량 (ha당 kg)	
	1994	'00~'03	'80~'83	'00~'03	증감률(%)	'80~'83	'00~'02
기니비사우	10	1.5	1.0	1.1	10.0	2.5	4.4
아이티	151	5.8	0.6	0.5	-16.7	3.2	12.8
레소토	160	0.1	1.4	1.2	-14.3	15.3	30.6
라이베리아	7	0.1	1.0	0.7	-30.0	5.3	0.0
마다가스카르	10	3.9	0.8	0.6	-25.0	3.7	2.6
말라위	51	1.3	0.6	0.5	-16.7	21.3	37.7
말리	10	0.7	0.6	1.0	66.7	5.4	8.8
모리타니	66	0.1	0.4	0.8	100.0	2.0	3.9
모잠비크	4	0.2	0.6	0.6	0.0	9.4	5.0
니제르	-	0.2	3.9	3.2	-17.9	0.3	0.3
르완다	259	0.5	0.4	0.3	-25.0	0.5	3.8
세네갈	-	1.4	1.1	0.8	-27.3	8.6	13.7
시에라리온	35	1.1	0.6	0.6	0.0	3.3	0.4
소말리아	90	0.5	0.4	0.4	0.0	1.5	0.5
수단	14	1.4	2.3	2.2	-4.3	5.6	3.9
토고	83	0.2	2.6	2.2	-15.4	1.3	7.1
우간다	84	0.1	1.0	0.8	-20.0	0.1	1.0
탄자니아	16	0.4	0.5	0.3	-40.0	7.2	2.5
잠비아	14	0.4	2.5	1.7	-32.0	15.3	8.4
아시아 LDC	86.4	15.8	0.7	0.5	-26.4	12.5	28.7
아프가니스탄	207	7.1	1.8	1.3	-27.8	6.4	1.8
방글라데시	71	49.5	0.3	0.2	-33.3	49.8	165.1
부탄	-	7.3	0.2	0.1	-50.0	1.1	0.0
캄보디아	49	5.1	0.8	0.8	0.0	5.1	0.0
라오	22	9.4	0.6	0.5	-16.7	2.7	8.7
미얀마	35	17.3	0.8	0.6	-25.0	13.8	13.7
네팔	65	27.5	0.3	0.2	-33.3	12.4	31.8
예멘	156	2.9	0.8	0.6	-25.0	8.8	8.8
Island LDC		11.3	2.0	1.9	6.2	0.2	4.2
카보베르데	-	4.1	1.2	1.2	0.0	0.8	4.1
코모로이슬람연방	-	-	0.6	0.5	-16.7	0.0	2.3
지부티	-	-	4.6	3.7	-19.6	0.0	0.0
몰디브	-	-	0.2	0.4	100.0	0.0	0.0
사모아	-	-	4.6	6.1	32.6	1.2	35.6

(표 2-9 계속)

국 가	농지 이용률 (%)	관개지 비율 (%)	농지비율 (농업인 1인당 ha)			비료소비량 (ha당 kg)	
	1994	'00~'03	'80~'83	'00~'03	증감률(%)	'80~'83	'00~'02
상투메 프린시페	-	18.4	1.2	1.2	0.0	0.0	0.0
솔로몬 군도	-	-	0.6	0.4	-33.3	0.0	0.0
티모르	-	-	0.5	0.6	20.0	0.0	0.0
투발루	-	-	2.0	2.0	0.0	0.0	0.0
바누아투	-	-	4.2	3.3	-21.4	0.0	0.0
LDC 전체	67.5	9.3	1.2	1.1	-9.3	5.7	13.1

자료: UNCTAD(<http://www.unctad.org>)

2000~03년과 1980~83년을 견주어 보면 농지 생산성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냄<표 2-10>.

- 1) 생산성이 하락한 것은 섬유 작물류, 과일류, 견과류, 유지류 등이고 상승한 분야는 곡물과 두류임.
- 2) 이는 개도국에서 모든 분야의 생산성이 증대된 것과 대조됨.

표 2-10. LDC의 농지 생산성

구분	국 가	평균 생산성(ha당 헥토그램)		증감율(%)
		1980~83	2000~03	
LDC	곡물	13,285	16,142	21.5
	섬유 작물류	5,069	4,906	-3.2
	과일류	59,902	57,462	-4.1
	견과류	7,919	6,359	-19.7
	유지류	2,187	2,171	-0.7
	두류	5,943	6,004	1.0
	근경류	-	-	-
	채소류	63,927	76,130	19.1
	코코아	2,431	2,524	3.8
	커피	4,250	5,337	25.6
	면화	6,561	8,411	28.2
	후추	5,301	7,791	47.0
	설탕	457,010	439,167	-3.9
	담배	8,608	10,579	22.9

(표 2-10 계속)

구분	국 가	평균 생산성(ha당 헥토품)		증감율(%)
		1980~83	2000~03	
개도국	곡물	21,192	30,392	43.4
	섬유 작물류	4,506	6,801	50.9
	과일류	91,836	100,286	9.2
	견과류	9,881	10,689	8.2
	유지류	3,089	5,709	84.8
	두류	6,199	7,035	13.5
	근경류	117,396	136,572	16.3
	채소류	114,746	166,080	44.7
	코코아	3,565	4,782	34.2
	커피	5,519	7,610	37.9
	면화	3,779	7,366	94.9
	후추	7,169	7,167	0.0
	설탕	576,345	654,660	13.6
	담배	13,335	15,836	18.8

자료 : UNCTAD(<http://www.unctad.org>)

2. LDC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 추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총 87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LDC 무관세·무쿼터(duty-free and quota-free: DFQF) 특혜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산물은 22개 품목임.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우리나라는 28개 LDC로부터 121개 품목, 1억 3,105만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함<표 2-11>.

수단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최대 수출국으로 LCD 전체의 33%(4,422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말라위 13%(1,851만 달러), 미얀마 14%(1,782만 달러), 에티오피아 9%(1,117만 달러), 부르키나파소 8%(995만 달러) 순임<그림 2-1>.

표 2-11. 한국-LDC간 농산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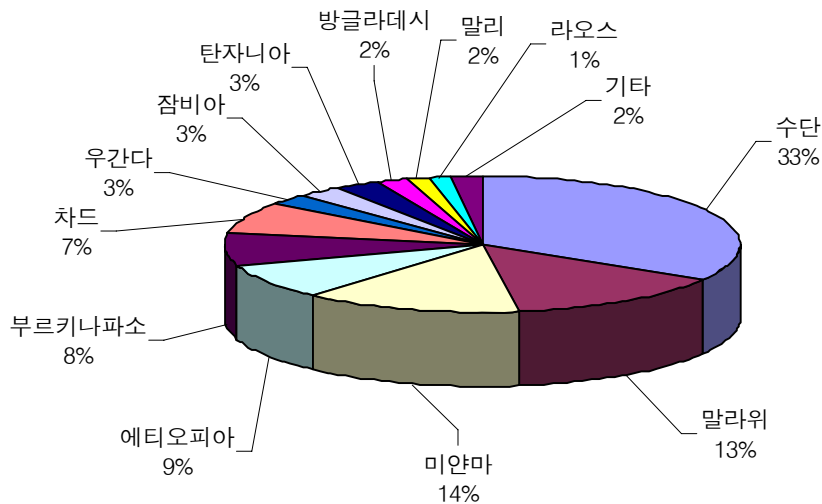
단위: 1,000달러

순위	국 가	2004	2005	2006	2007.7	합계
1	수단	31,443	5,899	6,104	772	44,218
2	말라위	1,414	1,487	4,191	11,418	18,510
3	미얀마	4,260	4,735	5,103	3,725	17,823
4	에티오피아	1,040	5,063	2,494	2,569	11,166
5	부르키나파소	7,096	2,853	0	0	9,949
6	차드	5,133	854	2,919	834	9,740
7	우간다	1,661	366	1,450	237	3,714
8	잠비아	3,632	0	0	1	3,633
9	탄자니아	554	630	347	2,080	3,611
10	방글라데시	472	462	1,100	283	2,317
11	말리	1,204	658	176	0	2,038
12	라오스	23	471	1,125	152	1,771
13	마다가스카르	349	86	162	299	896
14	모잠비크	0	0	124	335	459
15	캄보디아	258	77	72	31	438
16	네팔	54	9	115	24	202
17	지부티	195	0	0	0	195
18	솔로몬군도	0	0	0	140	140
19	라이베리아	116	0	0	2	118
20	니제르	0	0	0	26	26
21	기니	1	20	0	2	23
22	예멘	0	0	5	17	22
23	시에라리온	0	10	3	0	13
24	모리타니	0	9	0	0	9
25	콩고민주공화국	0	0	6	0	6
26	앙골라	2	0	0	0	2
27	바누아투	0	0(34)	0	0	0
28	세네갈	9	0	0	0	9
	합 계	58,916	23,689	25,496	22,947	131,048

주: HS 6단위 기준이며 ()안의 수치는 kg 중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그림 2-1. LDC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2004~07년 7월



주: HS 6단위 기준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국가별·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2-12>.

수단의 수출 품목은 참가가 95%로 대부분임.

- 1) 총 수출이 2004년 3,144만 달러에서 2006년 610만 달러로 감소한 것은 참가 수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말라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잎담배로 전체의 99%에 이룸.

- 1) 수출은 2004년에 136만 달러에서 2007년 7월에 1,142만 달러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냄.

미얀마는 기타 콩(34%), 강낭콩(30%), 부자/황련(24%)을 수출함.

- 1) 2004~06년에 수출은 426만 달러에서 510만 달러로 늘어남.
- 2) 기타콩은 감소하였으나 강낭콩과 부자/황련이 증가함.

에티오피아는 참깨(46%)와 커피(45%)를 주로 공급함.

1) 2004~06년에 참깨 수출은 변동이 크나 커피는 안정세를 보임.

표 2-12. 국가별 수입 추이

단위: 1,000달러

국가		품목	2004	2005	2006	2007. 7	합계
1	수단	합계	31,443	5,899	6,104	772	44,218
		참깨(과쇄여부불문)	30,658	5,090	5,716	556	42,020
		기타	785	809	388	216	2,198
2	말라위	합계	1,414	1,487	4,191	11,418	18,510
		잎담배(주맥제거)	1,364	1,443	4,176	11,411	18,394
		기타	50	44	15	7	116
3	미얀마	합계	4,260	4,735	5,103	3,725	17,823
		기타 콩(건조)	1,743	1,547	1,542	1,272	6,104
		강낭콩(흰 완두콩 포함)	1,066	1,516	1,682	1,025	5,289
		부자/황련	1,023	1,119	1,216	920	4,278
		기타	428	553	663	508	2,152
4	에티오피아	합계	1,040	5,063	2,494	2,569	11,166
		참깨(과쇄여부불문)	0	3,118	1,124	861	5,103
		커피(볶지않았으며 카페인제거하지않은것)	773	1,404	1,197	1,607	4,981
		기타	267	541	173	101	1,082
5	부르키나파소	합계	7,096	2,853	0	0	9,949
		기타 면	7,096	2,853	0	0	9,949
6	차드	합계	5,133	854	2,919	834	9,740
		기타 면	5,133	823	2,889	834	9,679
		아라비아검	0	31	30	0	61
7	우간다	합계	1,661	366	1,450	237	3,714
		잎담배(주맥제거)	1,554	217	1,387	234	3,392
		기타	107	149	63	3	322
8	잠비아	합계	3,632	0	0	1	3,633
		기타 면	3,632	0	0	0	3,632
		커피(볶지않았으며 카페인제거하지않은것)	0	0	0	1	1

(표 2-12 계속)

국가		품목	2004	2005	2006	2007. 7	합계
9	탄자니아	합계	554	630	347	2,080	3,611
		잎담배(주맥제거)	158	216	0	1,822	2,196
		커피(볶지않았으며 카페인제거하지않은것)	100	284	292	128	804
		기타	296	130	55	130	611
10	방글라데시	합계	487	465	1,120	296	2,368
		잎담배(주맥제거)	247	326	868	185	1,626
		기타	240	139	252	111	742
11	말리	합계	1,204	658	176	0	2,038
		기타 면	1,204	658	127	0	1,989
		코코아페이스트	0	0	49	0	49
12	라오스	합계	23	471	1,125	152	1,771
		담배 기타	10	452	1,124	83	1,669
		기타	13	19	1	69	102
13	마다가스카르	합계	349	86	162	299	896
		바닐라두	233	0	58	182	473
		정향정향 (과실, 꽃, 화경에 한함)	56	86	88	115	345
		기타	60	0	16	2	78
14	모잠비크	합계	0	0	124	335	459
		잎담배(주맥제거)	0	0	118	298	416
		기타	0	0	6	37	43
15	캄보디아	합계	258	77	72	31	438
		기타	243	48	1	24	316
		기타	15	29	71	7	122
16	네팔	합계	54	9	115	24	202
		커피(볶지않았으며 카페인제거하지않은것)	0	0	111	24	135
		천연꿀	49	0	1	0	50
		기타	5	9	3	0	17
17	지부티	합계	195	0	0	0	195
		사탕수수당밀	195	0	0	0	195
18	솔로몬군도	합계	0	0	0	140	140
		배합사료	0	0	0	140	140
19	라이베리아	합계	116	0	0	2	118
		돼지고기	116	0	0	0	116
		홍차(발효차), 반발효차 (용량이 6kg이하로 포장된 것)		0	0	2	2

(표 2-12 계속)

국가		품목	2004	2005	2006	2007. 7	합계
20	니제르	합계	0	84	0	26	110
		활성효모	0	79	0	0	79
		전분류	0	0	0	26	26
		맥주	0	5	0	0	5
21	기니	합계	1	20	0	2	23
		배합사료	0	20	0	0	20
		커피(볶지않았으며 카페인제거하지않은것)	1	0	0	2	3
22	예멘	합계	0	0	5	17	22
		커피(볶지않았으며 카페인제거하지않은것)	0	0	2	17	19
		깨	0	0	3	0	3
23	시에라리온	합계	0	10	3	0	13
		수피	0	10	0	0	10
		뿌리가없는삼수와접수	0	0	3	0	3
24	모리타니	합계	0	9	0	0	9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0	9	0	0	9
25	콩고민주공화국	합계	0	0	6	0	6
		인삼엑스	0	0	4	0	4
		사탕수수	0	0	2	0	2
26	앙골라	합계	2	0	0	0	2
		커피(볶았으며 카페인 제거한 것)	2	0	0	0	2
27	바누아투	합계	0	0*	0	0	0*
		과실쥬스	0	0*	0	0	0*
28	세네갈	합계	9	0	0	0	9
		포도주기타	9	0	0	0	9
합 계			58,916	23,689	25,496	22,947	131,048

주: HS 6단위 기준이며, *는 약간의 수입이 있음을 뜻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부르키나파소와 차드 모두 기타 면을 주로 수출함.

- 1) 2005년부터 부르키나파소의 수출 실적은 없음.
- 2) 차드 수출은 연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냄.

우간다, 탄자니아, 방글라데시는 주로 잎담배를 수출하고 있는데, 잎담배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1%, 61%, 69%를 나타냄.

잠비아와 말리는 주로 기타 면을 수출하는데, 2007년 들어 아직 수출 실적이 없음.

우리나라가 LDC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음.

- 1) 수입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참깨로 전체의 37%(4,723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잎담배 20%(2,602만 달러), 기타 면 19%(2,537만 달러), 기타 콩 5%(610만 달러), 커피 5%(595만 달러), 강낭콩 4%(529만 달러) 순임.
- 2) 상위 3대 품목(참깨, 잎담배, 기타 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임.

참깨는 수단(4,202만 달러, 89%)과 에티오피아(510만 달러, 11%)가 주요 공급국이고 잎담배는 말라위(1,839만 달러, 71%)와 우간다(339만 달러, 13%)의 점유율이 높음<표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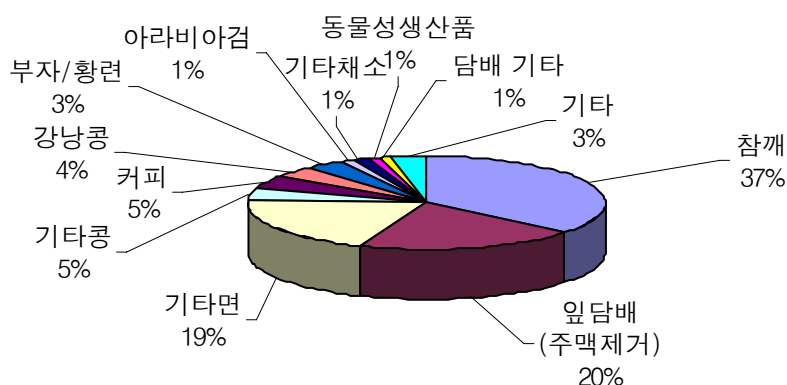
기타 면은 대부분 부르키나파소(995만 달러, 39%)와 차드(968만 달러, 38%)로부터 수입함.

기타 콩과 강낭콩은 미얀마가 유일한 수출국이며, 미얀마는 또한 부자/황련 시장의 96%를 장악하고 있음.

커피는 8개국에서 수입하는 데, 에티오피아(84%)와 탄자니아(14%)가 대부분을 차지함.

아라비아 껌은 수단(96%)과 차드(4%)로부터 수입이 전부임.

그림 2-2. 우리나라가 LDC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별 비중: 2004~07년 7월까지



주: HS 6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표 2-13. 주요 품목별 수출국 추이

단위: 1,000달러

품목	국가	2004	2005	2006	2007.7	합계
참깨 1207.40.0000	합계	30,671	8,291	6,851	1,417	47,230
	수단	30,658	5,090	5,716	556	42,020
	에티오피아	0	3,118	1,124	861	5,103
	탄자니아	0	83	0	0	83
	캄보디아	13	0	0	0	13
	미얀마	0	0	11	0	11
앞담배(주맥제거) 2401.20	합계	3,323	2,202	6,549	13,950	26,024
	말라위	1,364	1,443	4,176	11,411	18,394
	우간다	1,554	217	1,387	234	3,392
	탄자니아	158	216	0	1,822	2,196
	방글라데시	247	326	868	185	1,626
	모잠비크	0	0	118	298	416
기타 면 5201.00.90	합계	17,131	4,334	3,016	891	25,372
	부르키나파소	7,096	2,853	0	0	9,949
	차드	5,133	823	2,889	834	9,679
	잠비아	3,632	0	0	0	3,632
	말리	1,204	658	127	0	1,989
	탄자니아	66	0	0	57	123

(표 2-13 계속)

품목	국가	2004	2005	2006	2007.7	합계
기타 콩 0713.39.0000	합계	1,743	1,547	1,542	1,272	6,104
	미얀마	1,743	1,547	1,542	1,272	6,104
커피	합계	874	1,688	1,603	1,786	5,951
	에티오피아	773	1,404	1,197	1,607	4,981
	탄자니아	100	284	292	128	804
	네팔	0	0	111	24	135
	예멘	0	0	2	17	19
	말라위	0	0	1	7	8
	기니	1	0	0	2	3
	잠비아	0	0	0	1	1
	미얀마	0	0	0*	0	0
강낭콩 0713.33.9000	합계	1,066	1,516	1,682	1,025	5,289
	미얀마	1,066	1,516	1,682	1,025	5,289
부자/황련 1211.90.1000 1211.90.2000	합계	1,105	1,147	1,223	987	4,462
	미얀마	1,023	1,119	1,216	920	4,278
	라오스	11	18	0	66	95
	마다가스카르	57	0	0	0	57
	수단	14	10	4	1	29
	캄보디아	0	0	3	0	3
	방글라데시	0	0	0*	0	0
	네팔	0*	0	0	0	0
아라비아검	합계	629	533	316	212	1,690
	수단	629	502	286	212	1,629
	차드	0	31	30	0	61
기타		2,387	2,042	2,734	1,420	8,583

주: HS 6단위 기준이며, *는 약간의 수입이 있음을 뜻함.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3. 시사점

2004~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LDC에서 수입하는 농림축산물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3%로 낮음<표 2-14>.

표 2-14.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LDC가 차지하는 비중

연도	전체(100만\$)	LDC(100만\$)	LDC/전체(%)
2004	11,219.8	58.916	0.53
2005	11,888.5	23.689	0.29
2006	13,327.3	24.496	0.19
합 계	36,435.6	108.101	0.30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농림부(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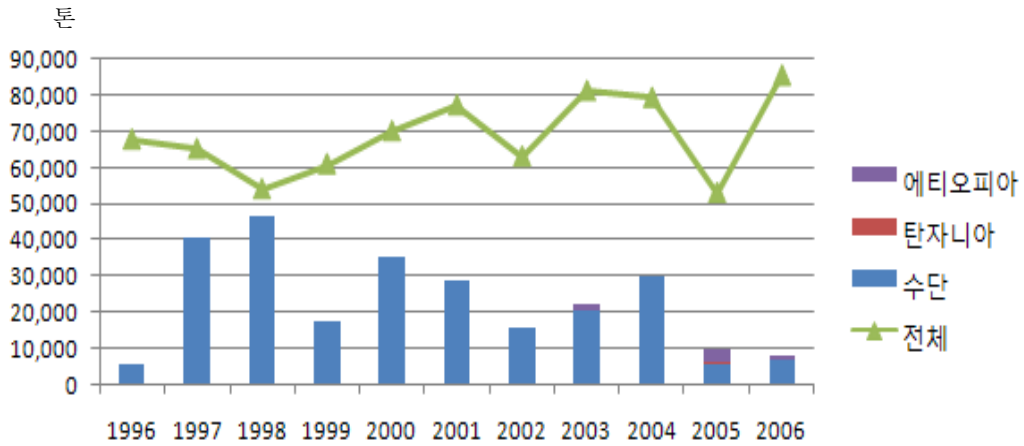
LDC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참깨, 잎담배, 면, 강낭콩과 기타 콩, 커피 등으로 소수 품목에 국한됨.

3.1. 참깨

참깨의 수입량 추이를 보면 <그림 2-3>과 같음.

- 1) 1996~2006년에 수입량은 52,977~85,567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2.5~4배 정도에 이룸.
- 2)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인도로 2005~06년에 각각 44%와 36%를 차지함.
- 3) 수단은 LDC 가운데 수단이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에서 수입량의 평균 34%(23,318톤)를 차지하였으나 2005~06년의 비중은 각각 12%(6,285톤)와 8%(7,078톤)로 감소함.
- 4) 다른 LDC 수출국으로서 탄자니아는 2005년에 108톤을 수출하였고 에티오피아는 2003년과 2005~06년에 각각 1,500톤, 3,769톤, 1,312톤을 수출함.
- 5) 1996년 후 LDC만으로도 TRQ 수준인 6,731톤 이상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630%의 높은 쿼터 밖 관세(out of quota rate)를 지급하고도 수입되고 있음을 뜻함.

그림 2-3. 참깨의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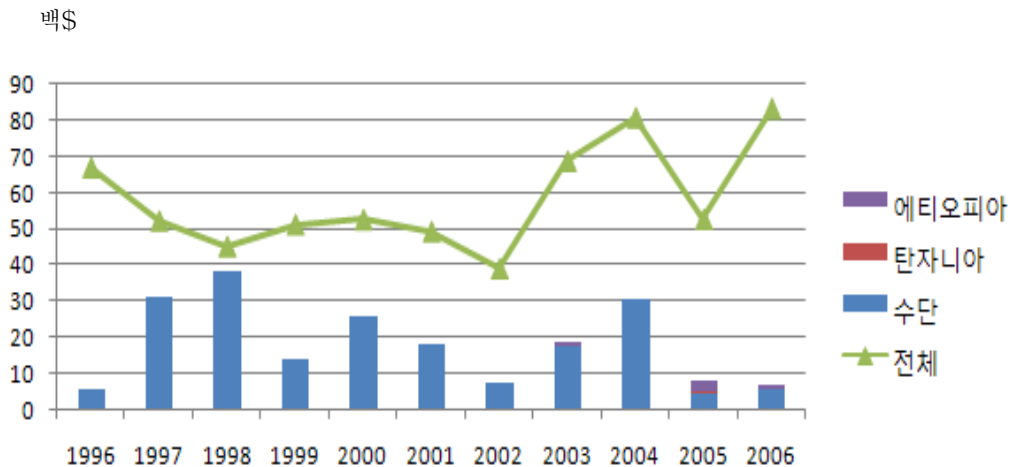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참깨의 수입액 추이를 보면 <그림 2-4>과 같음.

- 1) 1996~2006년에 수입액은 3,894~8,314만 달러를 기록함.
- 2) 전체 수입단가는 kg 당 평균 0.85달러였는데 수단은 0.78달러로 낮음.

그림 2-4. 참깨의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2004~06년에 참깨의 국내 생산량과 생산액, LDC로부터 수입량과 수입액을 비교하면 <표2-15>와 같음.

- 1) 낮은 수입단가로 말미암아 국내 생산액 대비 LDC 수입액은 평균 18%밖에 되지 않음.
- 2) 쿼터 밖 수입을 가정하여 관세율 630%를 적용하면 2004~06년에 국내 생산자가격은 kg 당 9,950원이고 수입단가는 7,000원 정도로 여전히 국내가 격이 1.4배 높게 나타남.

표 2-15. 참깨의 국내생산 현황과 LDC로부터 수입 비교

연도	생산량(톤)	①생산액(억원)	수입량(톤)	②LDC 수입액(억원)	②/①(%)
2004	20,863	2,160	30,013	589	27
2005	23,461	2,334	10,162	237	10
2006	15,500	1,480	8,410	245	17
합 계	59,824	5,974	48,585	1,081	18

주: 수입액(CIF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 기준으로 전환하는 환율은 편의상 1달러당 1,000원으로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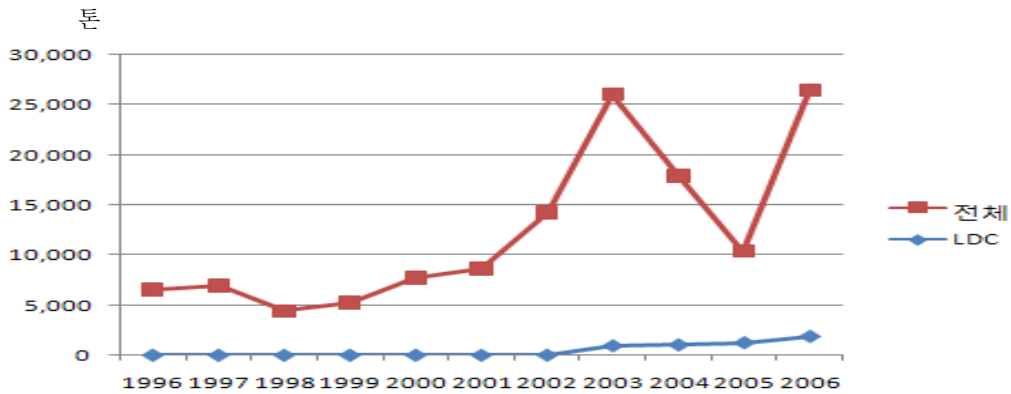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농림부(2007)

3.2. 잎담배

잎담배(HS: 240120)의 수입량 추이를 보면 <그림 2-5>와 같음.

- 1) 1996~2006년에 수입량은 4,460~26,385톤으로 오름세를 보임.
- 2)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 미국, 중국 등임.
- 3) 전체 수입에서 LD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에 4%에서 시작하여 2005년에 12%에까지 올랐다고 2006년에 7%로 떨어짐.
- 4) LDC 수출국은 말라위, 우간다,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모잠비크임.

그림 2-5. 잎담배의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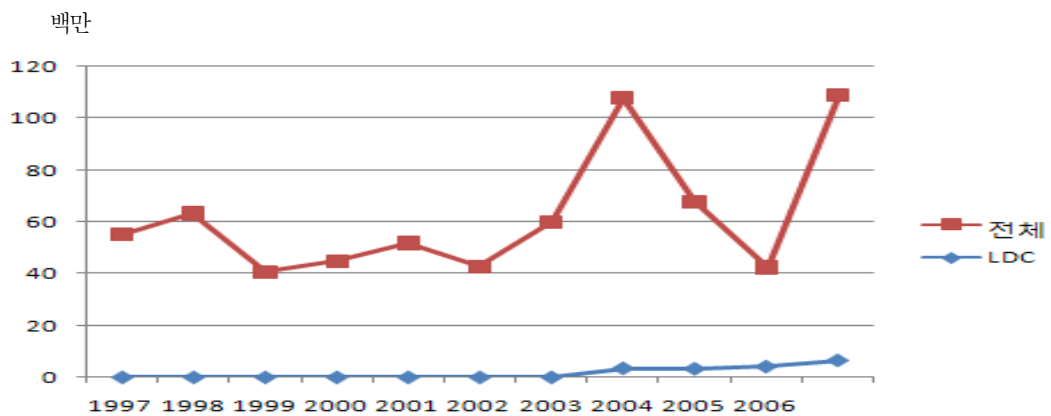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잎담배의 수입액 추이를 보면 <그림 2-6>과 같음.

- 1) 1996~2006년에 수입액은 4,088~10,859만 달러를 기록함.
- 2) 전체 수입단가는 kg 당 평균 5.1달러이고 LDC 평균은 3.5달러로 전체보다 낮음.
- 3) 잎담배는 이미 특혜 품목으로 지정되어 LDC에 관세율 54%가 적용되지 않음.

그림 2-6. 잎담배의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제 3 장

LDC 특혜 무역 조치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LDC를 포함하여 개도국을 위한 SDT는 1960년대부터 GATT에 포함됨.

- 1) 수출시장을 보호하고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개도국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둠.

WTO 체제 아래 SDT는 확대되어 왔으나 LDC의 수출 증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1996년에 열린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는 LDC에 자동으로 무관세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행동계획에 합의함(paras 5와 14).

- 1) LDC가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이하인데도 WTO가 LDC 문제를 다루는데 10년이 소요됨.

2001년에 카타르 도하에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는 도하 각료선언문(Doha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하여 새로운 무역라운드(DDA)를 출범시켰고, 여기에서 LDC에 대한 DFQF 목표가 제시됨(paras. 42와 43).¹

- 1) 추가로 LDC의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도 지적됨.

2004년에 제시된 WTO 기본 틀(Framework) 합의서는 도하 약속사항을 확인하고 선진국과 그럴 능력이 있는 개도국이 LDC가 수출하는 품목에 DFQF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함(농업 부문 부속서 A para. 45).²

- 1) 기본 틀은 LDC가 수출하는 비농산물에 대해서도 선진국이 자동으로 DFQF 시장접근을 허용함으로써 LDC 생산과 수출의 다각화를 지원하고 세계 무역체제에 통합을 증진시켜야 함을 강조함(부속서 B para. 10).

2005년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는 LDC에 DFQF 시장접근을 제공하기로 합의함(para. 47).³

- 1) 각료회의 전까지 개도국 특별우대(SDT)에 관한 협상에서 LDC의 25개 협상 제안서(proposals)가 DFQF 시장접근을 주장하였고, DFQF를 언급한 다른 5개 제안서와 더불어 이를 SDT 주요 협상의제로 부각시킴(WTO 2006a).

홍콩 각료선언문 부속서 F(WT/MIN(05)/DEC)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선진국과 할 만한 개도국은 2008년 또는 이행 기간 시작 때까지 모든 LDC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DFQF를 제공함.
- 2)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국가는 2008년 또는 이행 기간 시작 때까지 LDC가 수출하는 최소 97% 품목(관세라인)에 DFQF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위 사항에 이르도록 해야 함.

이와 같은 WTO의 약속, 특히 홍콩 각료 선언문이 LDC에 대한 DFQF 시장 접근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나 한계가 있다고 지적됨.

1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decl_e.htm>

2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da_e/draft_text_gc_dg_31july04_e.htm>

3 <http://www.wto.org/english/thewto_e/minist_e/min05_e/final_text_e.htm>

많은 LDC의 수출은 몇 품목에 집중되므로 97% DFQF 허용 또는 3% 관세라인의 예외는 이 합의의 혜택을 희석시킬 것이란 우려임<표 3-1>.

1) 미국과 EU는 관세라인 300개 이상을 DFQF 공여에서 배제할 수 있음.

표 3-1. 주요 선진국의 관세라인 수

국가	관세라인 수(개)	
	전 체	3% 예외
호주	6,102	183
캐나다	8,497	255
EU	10,404	312
일본	9,296	279
뉴질랜드	7,414	222
노르웨이	7,165	215
스위스	8,477	254
미국	10,496	315

자료: Tabari(2006)

예를 들면, 관세라인 비중 3%는 방글라데시와 네팔이 주요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는 거의 전체 품목에 해당할 수 있음<표 3-2>.

표 3-2.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수출 집중 현상

수출품 관세라인 비중	선진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방글라데시		네팔	
0.5%	70% 이상	캐나다 일본 미국	80% 이상	미국 일본
	90% 이상	호주	90% 이상	호주 캐나다
3%	거의 100%		거의 100%	

자료: Bhatt(2006)에서 정리

‘점진적으로(*progressively*)’ 완전한 DFQF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 시한도 정해지지 않음.

개도국은 자발적으로 DFQF 부여에 동참하도록 한 것은 LDC의 시장접근 개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홍콩 각료회의 후 계속 진행되는 DDA 협상에서 LDC 회원국들은 DFQF 시장접근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Nhara 2006).

- 1) 2008년까지 도입되는 DFQF 시장접근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각국 이행계획서(C/S)에 제시해야 함.
- 2) 안정, 보장,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DFQF 시장접근을 이행해야 함.
- 3) 이행 초기에 배제되는 품목을 밝히고, 모든 품목에 대해 DFQF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단계와 이런 단계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4) 특혜 품목에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은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4 5}

2007년에 DDA 농업협상회의 팔코너(Falconer) 의장이 제시한 모델리티(modality)는 LDC의 특혜 시장접근에 관하여 홍콩 각료 선언문의 부속서 F와 같은 제안을 내놓음.⁶

4 2006년에 LDC 그룹을 대표하여 잠비아는 원산지 규정이 단순화되고 투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시함(TN/CTD/W/30). 이 밖에도 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두 개의 LDC 제안서가 추가로 제시됨(TN/MA/W/74와 TN/AG/GEN/20).

5 비관세 장벽으로서 원산지 규정은 농산물보다 비농산물에 큰 영향을 미침(WTO 2006b).

6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gric_e/chair_texts07_e.htm>

2. UN의 논의 동향

1968년 UN 무역개발회의(UNCTAD) II의 결정문 21(ii)은 일반관세특혜제도(GSP) 설정을 규정함.

- 1) 개도국을 위한 일반화된, 비 호혜적, 무차별 특혜제도이며 LDC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치를 포함함.
- 2) GSP 제도 아래 개도국이 수출하는 일부 품목에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가 적용함.

1992년 카르테헤나(Cartagena)에서 열린 제8차 UNCTAD 회의(UNCTAD VIII)에서 LDC에 대한 DFQF 시장접근이 처음으로 제안됨.

- 1) 이후 이에 관한 논의는 상당 기간 진척을 이루지 못함.

2000년에 열린 UN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는 밀레니엄 선언문을 채택하여 8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목표(goal) 8은 특별히 LDC의 DFQF 필요성을 강조함.

2002년에 UN 브뤼셀(Brussels) 선언문은 무역확대가 LDC 성장과 개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인하고, 선진국 시장에서 LDC에 대한 DFQF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 1) ‘개발을 위한 지원(Financing for Development)’에 관한 2002년에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는 브뤼셀에서 채택한 LDC 실행 프로그램처럼 모든 LDC 수출품에 DFQF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함.

2004년 UNCTAD XI 회의가 채택한 상파울로 합의는 선진국이 LDC에 DFQF 접근을 신속하게 허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01년에 제시된 도하각료선언(Doha Ministerial Declaration)과 일관한, 의미 있는 시장접근을 촉구함.

제 4 장

주요국의 특혜무역제도

1. EU

EU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LDC에 대한 특혜를 두 가지 틀 속에서 운용해 옴.

- 1) 하나는 많은 LDC를 포함한 ACP(Africa,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 국가에 대한 것으로 특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
- 2) 다른 것은 ACP 이외 LDC를 포함한 개도국 조치로서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제도임.⁷

ACP 그룹을 대상으로 한 특혜무역 조치는 연이은 협약을 기초로 지속되어 옴.

- 1) 1960~75년에 맺은 협약은 상호 무역 특혜, 자유로운 자본이동, 유럽개발 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EDF) 등에 관한 것임.

⁷ GSP 개념은 UNCTAD 작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여국간 특혜조치의 조화를 목표로 도입 됨(Bora et al. 2002). GSP는 개도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MFN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개도국의 수출수익을 높이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임. 1968년 UNCTAD 결정문 No. 21은 GSP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개념은 WTO의 1979년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영구적으로 도입됨. GSP 조치의 기본 원칙은 ① 모든 개도국이 수혜국이 되는 일반화(generality), ② 비 상호주의(non-reciprocity), ③ 수혜국간 비차별(non-discrimination)임.

- 2) 1975~2000년에는 토고(Togo)의 수도 로메(Lome)에서 맺은 협약을 기초로 무역과 산업협력, 1차 상품 생산국의 수출수입 안정화, 재정지원과 기술협력 등의 규정을 담은 협정들을 체결함.

가장 최근의 EU-ACP간 협약은 2000년에 베냉(Benin)의 코토누(Cotonou)에서 체결한 것으로 이는 2020년까지 적용하는 규정임.

- 1) 그 주요 내용은 ① 수출수익이 과거 3개년 실적보다 10% 이상 감소하면 보상하는 스타벡스(Stabex) 제도를 운용함, ② 회원국이 조성한 € 138억의 EDF를 제공함, ③ WTO 관세감축에 따른 특혜 무역의 잠식(preference erosion)에 대응하여 2007년까지 ACP 국가 그룹과 지역경제 동반관계 (Regional Economic Partnership: REP)를 협상함 등임.⁸⁹

ACP 국가가 EU에 수출하는 것 중 절반 이상이 원료 농산물임.

- 1) EU의 공동농업정책(CAP) 적용대상 농산물은 전체의 11% 정도임.
2) 특별 무역의정서가 다루는 농산물을 제외한다면 79개 ACP 국가 중 11개 국가 주요 수출국임.

CAP 대상 주요 품목을 빼면 ACP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 농산물에는 무관세가 적용됨.

2001년에 채택한 EBA(Everything But Arms)은 전체 LDC에 대한 시장접근 특혜를 통합하고 개선한 조치임.

8 REP 협정은 EU와 개별 ACP 국가 간 각각 맺은 양자간 무역 특혜를 대체하는 것으로 ACP 국가의 세계경제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 REP 협정은 EDF와 같은 재정지원이 포함된 FTA로 간주할 수 있음. REP 협정은 상호주의(reciprocity), 지역(regions), LDC에 대한 특별 취급 등의 원칙에 근거함. 지금까지 ACP 국가들은 유럽 제품에 특혜를 주지 않았음.

9 2002년부터 시작한 REP 협상은 아프리카(4개), 카리브(1개), 태평양(1개) 등 6개 지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8년에 발효될 예정임.

- 1) 무기는 영구적으로 배제하고 바나나, 쌀, 설탕은 잠정적으로 유예시키면서 LDC가 수출하는 모든 상품을 관세와 쿼터 없이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
- 2) 바나나에 관한 관세는 2006년부터 없었고 쌀과 설탕에 관한 관세는 2006년부터 감축하다가 2009년 1월과 7월까지 각각 없앨 계획임.

이와 같은 EBA 시행으로 ACP 국가는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잠식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EU는 쌀과 설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표 4-1>.

표 4-1. EBA 협정 아래 쌀과 설탕의 TRQ 설정

단위: 톤

품목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쌀	2,517	2,895	3,329	3,829	4,403	5,063	5,823	6,696
설탕	74,185	85,313	98,110	112,827	129,751	149,213	171,595	197,335

주: 쌀의 유통연도는 2001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이고 설탕은 2001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임.

자료: Agra Informa(2007)

ACP 국가에 대한 코토누 협약과 EBA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 가운데 하나는 원산지 규정임.

- 1) EBA는 수출품의 비원산지 원료를 정해진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누적규정(cumulation rule)을 적용함.
- 2) 그러나 아시아 LDC만이 EU, 아세안(ASEAN), 중미공동시장(CACM), 남아시아지역연합(SAARC)에서 원료를 조달할 수 있음.
- 3) ACP 국가는 위와 같은 지역 안에서 누적규정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코토누 협약이 여전히 선호되는 형편임.
- 4)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를 ACP 국가끼리 조달하는 것도 원산지 규정 측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임.

주요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먼저 설탕 의정서(Sugar Protocol)는 ACP로부터 수입하는 130만 톤의 백설탕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역내 사탕무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가격보조 수준의 가격대를 ACP 국가에 보장함.

- 1) 이는 영구 규정임.
- 2) 설탕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조건 아래 16개 ACP 국가에 쿼터를 배분함.
- 3) 2006~10년에 EU는 설탕 보조가격 수준을 36% 감축하기로 하고 이로 말미암은 ACP 국가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2007~13년에 연간 €1억 6,500만을 제공할 계획임.

바나나 의정서(Banana Protocol)는 2006년부터 ACP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바나나 77만 5,000톤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고 쿼터 밖 수입에는 최혜국(MFN) 기준으로 톤당 €176(증가세로 33%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스와질란드, 케냐 등 아프리카 ACP 국가들은 연간 52,100톤의 소고기 쿼터를 8%의 관세로 EU 시장에 수출할 권한을 부여받음.

- 1) 그러나 동물 건강에 관한 EU의 엄격한 규제로 수출이 자주 중단됨.

2. 미국

미국은 3개 틀 속에서 LDC에 관한 특혜무역제도를 운용함(Wainio et al. 2005).

-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LDC에는 2000년부터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을 적용함.
- 2) 아시아 LDC에는 GSP 조치를 적용함.
- 3) 아이티(Haiti)에는 CBI(Caribbean Basin Initiative)를 적용함.

LDC-GSP 조치는 섬유, 장갑, 신발, 핸드백, 가방, 시계와 같은 민감품목을 제외하지만 AGOA는 많은 민감품목을 포함함.

- 1) AGOA 대상 품목은 시계, 전자제품, 철강, 신발, 핸드백, 가방, 장갑, 가죽 옷, 유리 제품 등임.

AGOA 대상은 관세라인 1,800개 이상이며, 농산물(600개 이상), 석유제품(20개), 공산품(700개 이상), 섬유와 신발(500개) 등을 포함함.

- 1) 최근에 포함된 농산물은 장미 절화, 감귤류(신선 및 주스), 채소(토마토, 셀러리, 오이, 마른 양파) 등임.

AGOA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함.

- 1) 예를 들어, 섬유산업의 경우 원단은 미국이나 다른 AGOA 국가로부터 조달해야 함.

LDC-GSP 조치는 GSP를 확대한 것으로 많은 아프리카 LDC가 참여함.

- 1) 관세라인 1,650개에 무관세 수입을 적용함.
- 2) 37개 AGOA 국가 가운데 22개국 LDC-GSP 조치의 혜택을 누림.¹⁰

이에 따라 AGOA와 LDC-GSP 대상 품목의 차이는 전자가 후자보다 관세라인 243개가 많은 것임.

LDC-GSP 품목은 해마다 점검을 받지만 AGOA 품목에 대한 점검은 GSP만큼 자주 이루어지지 않음.

- 1) 이는 AGOA 조치가 GSP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임을 나타내고 아프리카 LDC가 아시아 LDC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함.

¹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8개국 가운데 AGOA 대상국은 2007년 1월부터 라이베리아(Liberia)가 포함됨으로써 38개로 늘어남. 38개국 중 26개국은 AGOA의 섬유 부문 혜택을 누림(USTR 2007).

2) 이에 따라 AGOA는 슈퍼(super) GSP로 불림.

2006년에 AGOA 국가로부터 미국의 수입은 442억 달러로 이는 AGOA 대상 국가와 GSP 조치를 포함한 것임(USTR 2007).

- 1) AGOA 국가로부터 수입에서 석유제품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는데, 이를 제외하면 수입은 32억 달러임.
- 2) 원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가봉이 최대 AGOA 수혜국임.
- 3) 농산물은 3억 6,080만 달러임.

3. 주요국 비교

LDC 수출품에 특혜 시장접근 조치를 공여하는 주요 국가들의 상태를 비교하면 <표 4-2>와 같음.

2003년 기준으로 모든 관세라인을 대상으로 LDC에 대한 무관세 특혜 조치를 공여하는 나라는 호주임.

- 1) 싱가포르, EU, 뉴질랜드가 99% 이상의 관세라인을 무관세로 공여함.
- 2) 한국은 9.6%로 중국 6.6%, 태국 1.3%, 인도 1.2%보다 높으나 대만 18.5%보다 낮음.
- 3) 농산물은 한국이 5% 미만으로 중국보다 낮음.

LDC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호주 외에도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임.

- 1) 한국은 11.6%이며 농산물이 11.7%, 비농산물이 44.3%임.
- 2) 일본, 대만,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공여율이 비농산물보다 높은 특징을 나타냄.

표 4-2. 주요국의 LDC 특별무역 조치 비교: 2003년

국가	부문	관세라인 수(개)						수입(\$100만)			무관세 비율(%)		
		MFN			LDC			전체	LDC		관세라인	수입대상	
		전체	수입	관세 부과	수입	관세 부과 및 MFN 수입	관세 부과 특혜		관세 부과 수입 특혜	전체			관세 부과 대상
호주	전체	6,102	5,686	3,209	655	406	0	0	84,366	89	0	100	100
	농산물	773	651	215	73	21	0	0	3,975	14	0	100	100
	비농산물	5,326	5,032	2,994	582	385	0	0	75,915	75	0	100	100
	석유	3	3	0	0	0	0	0	4,477	0	0	100	n.a.
캐나다	전체	8,497	8,292	4,236	1,569	889	97	1	234,984	769	0	98.9	100
	농산물	1,372	1,269	821	194	65	97	1	14,531	36	0	92.9	100
	비농산물	7,124	7,022	3,415	1,374	824	0	0	210,598	405	0	100	100
	석유	1	1	0	1	0	0	0	9,855	329	0	100	100
중국	전체	7,445	6,977	6,950	639	562	-	-	411,494	6,268	418	6.6	93.3
	농산물	1,059	854	979	86	85	-	-	16,708	217	217	7.6	0.0
	비농산물	6,385	6,122	5,971	552	477	-	-	375,004	593	201	6.5	66.2
	석유	1	1	0	1	0	-	-	19,782	5,458	0	100	100
EU	전체	10,404	10,115	8,228	3,517	2,716	67	19	992,010	13,705	120	99.4	99.1
	농산물	2,115	1,918	1,713	505	345	42	17	66,248	1,562	120	98.0	92.3
	비농산물	8,287	8,195	6,515	3,011	2,371	25	2	824,311	10,184	0	100	100
	석유	2	2	0	1	0	0	0	101,451	1,959	0	100	100

(표 4-2 계속)

국가	부문	관세라인 수(개)										수입(\$100만)			무관세 비율(%)	
		MFN					LDC					전체	LDC	관세 부과 대상	관세라인 수입대상	
		전체	수입	관세 부과	수입	관세부과 MFN 수입	관세 부과 특혜	관세 부과 수입 특혜								
인도	전체	5,113	4,648	5,054	926	910	-	-	-	51,302	1,324	1,274	1.2	3.8		
	농산물	677	501	658	169	159	-	-	-	3,713	600	585	2.8	2.5		
	비농산물	4,435	4,146	4,395	757	751	-	-	-	34,560	724	689	0.9	4.9		
	석유	1	1	1	0	0	-	-	-	13,029	n.a.	n.a.	0.0	n.a.		
일본	전체	9,296	8,204	5,950	776	465	1,350	89	376,941	1,564	766	85.5	51.0			
	농산물	1,858	1,433	1,397	121	58	938	31	37,152	177	5	49.5	97.0			
	비농산물	7,436	6,769	4,551	654	406	410	57	293,950	746	120	94.5	83.9			
	석유	2	2	2	1	1	2	1	45,839	641	641	0.0	0.0			
한국	전체	11,261	10,119	10,402	768	708	10,183	656	178,823	901	796	9.6	11.6			
	농산물	1,537	1,222	1,510	91	90	1,462	84	9,603	41	36	4.9	11.7			
	비농산물	9,714	8,888	8,882	672	613	8,711	567	146,139	226	126	10.3	44.3			
	석유	10	9	10	5	5	10	5	23,082	634	634	0.0	0.0			
뉴질랜드	전체	7,414	6,256	3,393	521	363	59	3	18,439	31	0	99.2	100			
	농산물	1,026	755	412	51	12	36	2	1,543	7	0	96.5	100			
	비농산물	6,387	5,500	2,981	470	351	23	1	15,886	24	0	99.6	100			
	석유	1	1	0	0	0	0	0	1,010	0	0	100	n.a.			

(표 4-2 계속)

국가	부문	관세라인 수(개)										수입(\$100만)			무관세 비율(%)	
		MFN			수입	LDC				전체	LDC		관세 부과 대상	관세라인	수입대상	
		진체	수입	관세 부과		관세부과 MFN 및 수입	관세 부과 특혜	관세 부과 수입 특혜	진체		관세 부과 대상					
노르웨이	전체	7,165	6,517	1,178	509	209	261	2	39,765	81	0	96.4	99.5			
	농산물	1,337	1,055	850	55	19	258	2	2,724	12	0	80.7	96.4			
	비농산물	5,826	5,461	328	454	190	3	0	36,903	70	0	99.9	100			
	석유	2	1	0	0	0	0	0	138	0	0	100	n.a.			
싱가포르	전체	5,843	5,561	4	916	3	-	-	114,594	737	0	99.9	100			
	농산물	844	752	4	142	3	-	-	3,986	145	0	99.5	100			
	비농산물	4,998	4,808	0	773	0	-	-	103,033	285	0	100	100			
	석유	1	1	0	1	0	-	-	7,574	307	0	100	100			
스위스	전체	8,477	7,809	7,033	818	696	1,167	20	96,177	118	5	86.2	95.5			
	농산물	2,227	1,774	1,920	185	141	1,156	20	6,418	41	5	48.1	88.9			
	비농산물	6,248	6,034	5,113	633	555	11	0	88,728	77	1	99.8	99.0			
	석유	2	1	0	0	0	0	0	1,031	0	0	100	n.a.			

(표 4-2 계속)

국가	부문	관세라인 수(개)										수입(\$100만)			무관세 비율(%)	
		MFN			LDC				관세 부과 수입 특혜	관세 부과 수입 특혜	관세 부과 대상	전체	관세라인	수입대상		
		전체	수입	관세 부과	수입	관세부과 MFN 및 수입	관세 부과 특혜	관세 부과 수입 특혜							관세	LDC
대만	전체	8,688	7,862	7,085	491	394	-	-	-	-	108,715	872	30	18.5	96.5	
	농산물	1,387	1,119	1,046	66	43	-	-	-	-	5,516	67	8	24.6	87.4	
	비농산물	7,299	6,742	6,038	424	351	-	-	-	-	96,444	97	22	17.3	77.4	
	석유	2	1	1	1	0	-	-	-	-	6,755	708	0	50.0	100	
태국	전체	6,834	6,100	6,748	704	693	-	-	-	49,356	1,057	1,054	1.3	0.3		
	농산물	998	740	976	110	109	-	-	-	2,386	127	127	2.2	0.0		
	비농산물	5,835	5,359	5,771	593	583	-	-	-	43,085	317	314	1.1	1.0		
	석유	1	1	1	1	1	-	-	-	3,884	614	614	0.0	0.0		
미국	전체	10,496	10,123	7,279	1,421	1,016	1,911	581	1,196,833	10,489	3,991	3,991	81.8	62.0		
	농산물	1,808	1,565	1,424	183	103	274	3	49,988	361	2	2	84.8	99.4		
	비농산물	8,686	8,556	5,853	1,236	911	1,637	578	1,077,792	5,472	3,989	3,989	81.2	27.1		
	석유	2	2	2	2	2	0	0	69,053	4,656	0	0	100	100		

주: 1. 인도와 싱가포르 2001년, 대만 2002년, 태국 1999년 자료임.
 2. 노르웨이는 2002년 7월부터 LDC 수출품에 대해서 DFQF 조치를 이행함.
 3. 비농산물은 석유를 제외한 것임.

자료: WTO(TN/MA/S/19/Corr.1)

4. 시사점

LDC에 대한 특혜무역제도가 차츰 확대·확충되고 있는 추세임.

- 1)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부 개도국도 LDC 특혜무역 조치를 도입함.
- 2) 이는 우리나라의 특혜무역제도 확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3) 특혜품목의 범위가 민감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음.

스위스처럼 농산물 수입국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특혜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국가들은 전환기간 없이 DFQF를 도입하기도 함.

주요 선진국의 수입 시장에서 LDC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아 LDC의 특혜무역제도 혜택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표 4-3>.

표 4-3. QUAD 국가에서 LDC로부터 상품 수입 비중

수입국	수출국	총수입 대비 비중(%)		
		1982년	1992년	2002년
캐나다	LDC	0.1	0.2	0.2
	다른 개도국	12.4	12.5	17.4
EU	LDC	0.8	0.5	0.6
	다른 개도국	21.2	13.9	16.5
일본	LDC	0.7	0.5	0.4
	다른 개도국	62.4	49.7	59.4
미국	LDC	1.0	0.8	0.8
	다른 개도국	41.3	40.3	47.2

자료: UNCTAD(2003)

LDC의 특혜무역제도 활용도가 아직 낮은 것은 공여국이 시행하는 원산지 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그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1) 예를 들면, 원산지 제도는 LDC 개발 단계를 고려하고 모든 특혜 공여 국가간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특정 LDC나 지역무역(RTA) 상대국이 수출하는 품목은 수출 LDC에서 비롯된 품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임.

모든 LDC가 자동으로 특혜무역 대상국이 되는 것이 아님.

- 1) 특혜무역제도 공여국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LDC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제 5 장

우리나라의 특혜무역제도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LDC로부터 수입하는 93개 품목(HS 6단위, 10단위 기준)에 대해 무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표 5-1>.

- 1) 이는 관세법 제76조 제3항에 근거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19810호)”에 따른 것임.
- 2) 무관세 대상 품목은 전체의 1.8%에 해당함.

표 5-1. 우리나라가 부여한 특혜 관세라인과 관세율

분 류	특혜 대상 품목		HS 기 준
	수(개)	비율(%)	
전체	5,052	100.0	HS 6단위
특혜 공여	93	1.8	HS 6단위 83개 HS 10단위 10개
특혜 공여 제외	29	0.5	HS 6단위

자료: 농림부

특혜대상 가운데 농산물 관련 품목은 32개 관세라인(HS 10단위로 56개 품목)임<표 5-2>.

- 1) 이는 농산물 관세라인(HS 10단위 기준)의 3.9%에 해당함.

WTO가 권고한 116개 품목 안에서 보면 87개가 무관세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임.

1) 이 가운데 농산물은 22개임.

국내 산업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고기, 콩, 쌀과 같은 농산물, 섬유제품, 원유 등이 제외됨<표 5-3>.

1) 소고기, 콩, 채소, 유지작물, 쌀, 참깨, 땅콩, 건포도 등 공여 제외 품목 대부분은 국내산 농산물과 직접 경쟁 관계가 있거나 대체 품목임.

무역특혜의 내용은 특혜대상 품목을 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임.

1) 같은 품목이나 경쟁 관계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특혜무역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피해를 받는다면 재정경제부 장관의 직권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중단할 수 있음.

표 5-2. 우리나라가 부여한 특혜대상 농산물과 관세율

HS	품 명	관세율 (%)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01.3	캐슈넛	-
0801.31	탈각하지 아니한 것	0
0801.32	탈각한 것	0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02.60	마카다미아 너트	0
0802.90	기타	0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0901.1	커피(볶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	0
0905.00	바닐라	0
0907.00	정향[과실·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0
1007.00	수수	0

(표 5-2 계속)

HS	품 명	관세율 (%)
1008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1008.20	밀리트	0
1203.00	코프라	0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일(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7.20	면실	0
1301	락과 천연검·수지·검수지 및 올레오레진(예 : 발삼)	-
1301.20	아라비아 검	0
ex 1301.90	기타(락을 제외한 것에 한한다)	0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
1404.20	면린터	0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08.10	조유(粗油)	0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1.10	조유	0
1513	야자(코프라)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3.1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
1513.11	조유	0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	-
1701.1	조당(항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701.11	사탕수수당	0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에 한한다)	-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0
1801.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0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2005.60	아스파라거스	0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2401.10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표 5-2 계속)

HS	품 명	관세율 (%)
2401.20	잎담배(주맥을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한 것에 한한다)	0
2402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켈런(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2402.20	켈런(담배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0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앵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에큐어스 솔루션	-
3301.2	정유(감귤류 외의 것에 한한다)	
ex 3301.29	기타(제라늄유, 자스민유, 라벤다유와 라반딘유를 제외한다)	0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4102.2	탈모한 것	-
4102.21	산처리한 것	0
4103	기타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 4103.90	기타: 식물성 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유연전처리한 산양의 것	0
4301	생모피(모피사용에 적합한 머리부분·꼬리부분·발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 또는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를 제외한다)	-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브로드테일·카라쿨·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0

(표 5-2 계속)

HS	품 명	관세율 (%)
5101	양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
5101.2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5101.21	작은 양모	0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
5102.1	섬수모	-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5102.19	기타	0
5201.00	면(카드 또는 코옴한 것을 제외한다)	0

주: ex는 해당 HS 품목 중 일부 품목에 한하여 양허되었음을 나타냄.

자료: 법제처<http://www.klaw.go.kr/CNT2/Bylpyo/MCNT2BylpyoFrame.jsp?s_lawmst=76947&s_bylmst=713275>

표 5-3. WTO 권고 품목 중 특혜대상에서 배제된 품목

분 류	품목 수	품 목
농산물	13	뼈없는 소고기, 콩, 채소 기타, 유지작물 기타, 바나나, 망고, 건포도, 홍차류, 쌀, 참깨, 땅콩, 발포성 포도주, 오일케이크
임산물	1	합판
수산물	8	냉동 활다랭어, 냉동 가다랭어, 냉동어류 기타, 건조한 어류 기타, 냉동새우와 보리새우, 오징어, 연체동물 기타, 통조림 다랭이
공산품	7	원유, 석유제품, 티셔츠 등, 인조섬유제의 가디건 등, 남자용 재킷 등, 면제 남자용 셔츠, 인조섬유제의 남자용 셔츠

자료: 정재호(2007)

우리나라와 주요국이 LDC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표 5-4>와 같음.

- 1) 2003년 기준으로 EU의 수입 비중은 1.4%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보다 높음.
- 2)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LDC 수입 비중은 낮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LDC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원유와 같은 원자재와 섬유류 제품이 대부분임.

- 1) 우리나라가 LDC에서 수입하는 총액 가운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91%에서 2006년에 58%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품목임.
- 2) 2006년에 LDC가 국내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1%이나 원유를 빼면 0.33%가 됨.

표 5-4. 주요국의 LDC 수입 비중(%): 2003년

구분	EU	미국	일본	한국
농산물	3.3	0.8	0.9	0.4
공산품	1.2	0.9	0.3	0.5
전 체	1.4	0.9	0.4	0.5

자료: 정재호(2007)

제 6 장

우리나라의 특혜무역제도 확대 영향

1. DFQF 품목의 선정 기준

LDC에 대한 DFQF 양허 품목을 결정하는 기본 방향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피해)이 가장 작은 것을 선정하는 것임.

- 1) 국내 영향은 해당 품목 또는 대체 품목의 생산이나 가격 또는 재배 농가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 2) 그러나 HS 10단위로 세분화된 품목 특성, 자료 제약, LDC의 낮은 시장 점유율 등의 제약으로 의미 있는 계량분석에 한계가 있음.¹¹
- 3) 이에 따라 국내 영향을 직접 계측하는 대신에 분석적 방법을 활용하여 관세율 변화, 생산 및 수출입 추이, FTA 협정세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논하기로 함.

LDC에 대한 DFQF 공여 품목으로 선정하여도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도출하려고, 먼저 핵심 기준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부가 기준으로써 그 결과를 보완하거나 확충하도록 함.

¹¹ LDC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참깨, 잎담배 등 특작 비중이 크고 이에 대한 계량 연구는 거의 없음. 또한 수급 자료에 대한 제약으로 분석에 한계가 있음.

1.1. 핵심 기준

핵심 기준은 DFQF 대상 품목 선정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임.

- 1) 다른 기준과 관계없이 독립적·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1.1. 실행 관세율이 낮은 품목

실행 관세율이 이미 낮은 품목에 대한 DFQF 부여는 국내농업 부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논리임.¹²

- 1) 관세감축(DFQF)의 한계효과는 기존 관세율의 높낮이에 달려 있지 않으나,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민감품목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 2) 여기에다 DDA 협상 결과로 관세율이 더 감축될 것까지 예상한다면 관세 감축으로 말미암은 국내 영향은 작다고 볼 수 있음.

1.1.2. FTA를 통해 단기간에 관세를 없애거나 낮게 양허한 품목

양자 무역협정에서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은 민감도가 낮거나, 유예기간 후에 농업 부문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간주한 것이므로 DFQF로 말미암은 국내 영향은 작다고 볼 수 있음.

1.2. 부가 기준

부가 기준은 핵심 기준을 적용한 후 2단계로 적용하는, 세부 검정(filtering) 기능을 하는 기준임.

¹² 양허 관세율이 아닌 실행 관세율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후자가 실제 수입에 사용되므로 국내영향을 평가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1) 더욱 면밀한 DFQF 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추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핵심 기준과 연계한 종속 기준임.

1.2.1. 수입 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

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이므로 DFQF 부여로 말미암은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1.2.2.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은 품목

DFQF 부여로 수입이 늘어나도 국내 농산물보다 기존 수입 품목끼리 대체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1.2.3. LDC가 수출하지 않는 품목

LDC가 수출하지 않은 품목은 DFQF 아래에서도 국내 유입 가능성이 낮음.

2. 핵심기준 적용과 분석

2.1. 실행 관세율이 낮은 품목

HS 10단위 기준으로 총 관세라인 1,452개의 관세구조 아래 실행세율 평균은 57%이고 중간 값(median)은 18%임.¹³

- 1) 이 가운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30개이고, 최대 2014년까지 관세화

¹³ 실행 세율은 2005년 기준임.

유예가 적용되는 쌀 품목은 16개임.

- 2) 관세율이 100% 이상인 고관세 품목(쌀 제외)은 126개로 전체 관세라인의 8.7%임.

국내 영향 측면에서 ‘낮은’ 관세율의 정의가 필요하나 이에 적합한 절대 기준이 없으므로 관세라인 백분위 5%, 10%, 15%, 20%를 각각 ‘낮은’ 관세율로 가정하여 분석함.

백분위 기준에 따라 실행 세율을 분류·분석하면 <표 6-1>과 같음.

백분위 5% 또는 관세율 3% 이하 품목 수는 총 101개(HS 10단위 기준, 영세율 품목 제외)로 전체의 7%를 차지함.

- 1) 주요 품목 중 돼지고기(HS 0209-00-1000)는 돼지비계이며 세율은 3%임.

백분위 10% 또는 관세율 5% 이하 품목 수는 총 165개로 전체의 11% 가량을 차지함.

- 1) 백분위 5%에 해당하는 품목 이외에도 땅콩, 감귤, 오렌지, 토마토, 포도, 해바라기 등이 추가됨.
- 2) 감귤(3301-19-0000)은 감귤로 만든 정유이고 오렌지(3301-12-0000)도 기름을 말함.
- 3) 토마토(2002-90-1000)는 페이스트(paste)이고 땅콩(2305-00-0000)은 오일 케이크와 유박임으로 실행 세율은 각각 5%임.

백분위 15% 또는 관세율 6.6% 이하 품목 수는 총 175개로 전체의 12% 가량을 차지함.

- 1) 백분위 10%와 견주어 품목 수 비중은 1% 포인트 차이남.
- 2)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제 식료품과 콘플레이크로 세율 5.4%임.

표 6-1. 관세라인 백분위 기준별 분석 결과

백분위 (%)	실행세율 (%)	품목 수 (개)	비중 (%)	주요 품목
5	3.0 이하	101	7	가금류, 겨자, 견사류, 곡물 기타, 귀리, 누에, 당류, 동물 생산품, 돼지, 돼지고기, 락검액즙, 레몬, 마류, 면사류, 밀, 사탕무, 사탕수수, 섬유, 소, 수수, 식물 생산품, 양, 양귀비, 양모류, 원피, 유지류, 조, 종자 기타, 커피, 코코아, 콩, 팜유, 피마자, 호밀
10	5.0 이하	165	11	가공곡물 기타, 가금류, 감귤, 겨자, 견사류, 곡물 기타, 귀리, 누에, 당류, 동물 생산품, 돼지, 돼지고기,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면사류, 모피류, 무, 미곡, 밀,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섬유, 소, 수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양, 양귀비, 양모류, 오렌지, 옥수수, 원피, 유지류, 조, 종자 기타, 커피, 코코아, 콩, 토마토, 팜유, 포도, 피마자, 해바라기, 호밀
15	6.6 이하	175	12	가공곡물 기타, 가금류, 감귤, 겨자, 견사류, 곡물 기타, 귀리, 누에, 당류, 동물 생산품, 돼지, 돼지고기,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면사류, 모피류, 무, 미곡, 밀,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섬유, 소, 수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양, 양귀비, 양모류, 오렌지, 옥수수, 원피, 유지류, 조,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커피, 코코아, 콘플레이크, 콩, 토마토, 팜유, 포도, 피마자, 해바라기, 호밀
20	8.0 이하	589	41	가공곡물 기타, 가금류, 감귤, 개, 거북, 겨자, 견사류, 계피, 고래, 고추, 곡물 기타, 과일 기타, 귀리, 꿀, 나무, 낙농품, 누에, 단감, 단풍당, 닭, 당나귀, 당류, 대, 동물,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돼지, 돼지고기, 된장,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말, 면류, 면사류, 모피류, 미곡, 밀, 밤, 베이커리, 보리, 사료, 사슴, 사탕무, 사탕수수, 살구, 섬유, 소, 수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아몬드, 아편, 양, 양귀비, 양모류, 오렌지, 옥수수, 올리브, 원피, 유기화합물, 유지류, 음료수, 인삼, 자라, 잣, 조,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초콜릿, 치커리, 칩, 카사바, 커피, 코르크류, 코코아, 콘플레이크, 콩, 토끼, 토마토, 파스타, 판지류, 팜유, 포도, 포도당, 피마자, 해바라기, 호도, 호밀, 화훼류, 후추

주:1. 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이고 영세율을 제외한 것임.

2. 주요 품목은 실품목 기준으로 여러 관세라인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음.

백분위 20% 또는 관세율 8% 이하 품목 수는 총 589개로 전체의 41% 가량을 차지함.

- 1) 많은 품목이 추가되는데 고추, 꿀, 낙농품, 단감, 밤, 보리, 올리브, 인삼, 잣, 호도, 화훼류 등으로 대부분 세율은 8%임.
- 2) 고추(2103-90-1030)은 고추장이고 꿀(0106-90-2010)은 꿀벌을 말함.
- 3) 낙농품(0405-20-0000)은 스프레드(spread)임.
- 4) 단감(0602-20-5000), 밤(0602-20-7010), 잣(0602-20-7030), 호도(0602-20-7020)는 모두 나무임.
- 5) 보리(1806과 1901)는 베이커리나 조제식료품 목적의 보릿가루 또는 볶음 치커리(2101-30-1000)임.
- 6) 인삼은 인삼차(2106-90-3011)와 기타 백삼제품(2106-90-3019) 및 음료(2202-90-1000)을 포함함.
- 7) 화훼류는 휴면상태 또는 경엽성장의 것이 주류이고 국화, 안개초, 카네이션, 장미 등으로 구성됨.

2.2. FTA에서 중단기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2.2.1. FTA 양허관세 비교

2007년까지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ASEAN), 미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발효함<표 6-2>.

이 가운데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과 맺은 FTA에서 양허한 관세율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표 6-3>과 같음.

칠레와 FTA에서 곧바로 또는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수(HS 10 단위)는 전체의 54% 또는 783개 품목에 이룸.

- 1)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은 쌀과 관련 조제품, 신선사과와 배로 21개 품목임.

2) DDA 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감안하여 양허하기로 387개 품목을 지정함.

표 6-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현황

FTA 대상국	서명일	발효일	분야
칠레	2003. 2. 15.	2004. 4. 1.	전체
싱가포르	2005. 8. 4.	2006. 3. 2.	전체
EFTA	2005. 12. 15.	2006. 9. 1.	전체
ASEAN	2006. 8. 24.	2007. 6. 1.	상품
미국	2007. 4. 2.	-	전체

주: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임.

2. ASEAN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임.

자료: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user/index.asp>)

싱가포르와 FTA는 양허 제외가 전체의 33%에 이르는 등 가장 보수적인 결과에 속함.

- 1) 양허 제외 품목은 육류, 낙농품, 곡물류, 채소류, 인삼, 감자, 고구마, 과실류, 담배, 인삼 등으로 포괄적임.
- 2) 관세의 곧바로 철폐는 232개 품목으로 전체의 16%가량이고 이를 5년 이내 관세철폐와 합하면 41%에 이름.

ASEAN과 FTA에서 관세를 곧바로 없애는 품목은 전체의 37%, 5년 안에 없애는 품목(곧바로 없애는 품목 포함)은 69% 가량임.

- 1) 5년내 관세 철폐 비중은 비교 대상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2) 양허 제외 품목은 쌀,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아열대 과실류, 녹차 등 64개 품목임.

미국과 FTA는 양허 제외 품목 수가 쌀 16개에 국한되는 등 가장 시장개방 폭이 큰 협정으로 볼 수 있음.

- 1) 관세를 곧바로 없애는 품목 수는 전체의 38%가량이고 5년 안에 없애는 품목 수는 전체의 61%가량임.

표 6-3. 우리나라의 FTA 관세율 양허결과 비교

양허 내용 (관세철폐 기간)	FTA별 품목 수(HS 10단위)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
곧바로	243	232	532	578
3년 이내	-	-	306	39
5년	540	358	167	317
7~9년	41	-	-	65
10년	208	378	-	343
11~16년	12	-	-	158
기타	387	-	383	15
제외	21	484	64	16
합 계	1,452	1,452	1,452	1,531

- 주: 1. ASEAN의 '3년 이내'에는 '2008년', '5년'에는 '2010년'에 없애는 것을 포함함.
 2. 칠레의 '기타'는 DDA 타결 후에 다시 협상하기로 한 품목 수를 포함함.
 3. ASEAN의 '기타'는 철폐 없이 감축만 하거나 TRQ로 양허한 품목 수를 나타냄.
 4. 미국의 '기타'는 관세율을 유지하면서 TRQ를 증량하는 품목임.
 5. 미국의 관세라인 수가 많은 것은 FTA 협상 당시 같은 HS 코드 안에서 분리된 것과 추가된 품목이 있기 때문임.

자료: 농림부;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

2.2.2. DFQF 대상 품목 선정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과 맺은 FTA 양허 내용을 비교하여 중단기(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을 DFQF 대상으로 정한다면 <표 6-4>과 같음.

- 1) 품목은 HS 10단위 기준임.

관세를 곧바로 없애기로 양허한 품목은 <표 6-5>과 같음.

- 1) 4개 FTA 모두에서 관세를 곧바로 없애기로 한 품목은 DFQF 대상으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함.¹⁴

이상과 같이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과 FTA 양허 결과 중 관세를 곧바로 없애기로 한 품목은 모두 751개 품목으로 전체의 52%임.

- 1)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FTA 협정국에 양허한 품목을 DFQF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다면 전체 품목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것임.

DFQF 대상 품목을 더 확대한다면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양허한 1,138개 품목(전체의 78%)을 고려할 수 있음<표 6-6>.

- 1) 이는 관세를 곧바로 없애기로 한 품목을 포함하는 누진적 통계임.
- 2) 특히 FTA 모두에 양허한 품목 수는 535개로 곧바로 관세를 없애는 품목 수보다 359개가 늘어남.

표 6-4. 관세 철폐 시한별 FTA 및 품목 수 비교

FTA 수(개)	품목 수(개)	
	곧바로 철폐	5년 철폐
(0)	(701)	(314)
1	362	247
2	154	219
3	59	137
4	176	535
합 계	751	1,133

주: FTA 수가 '0'인 품목은 5년 철폐 대상이 아닌, 중장기 또는 예외나 기타에 속하는 것임.

¹⁴ 미국과 FTA 대상 품목 수는 다른 FTA보다 많았으나 비교를 위해 공통의 관세라인 수인 1,452개를 분석 대상으로 함.

표 6-5. FTA에서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FTA 수	품목 수	품 목
4	176	가금류, 견사류, 곡물기타, 귀리, 누에, 담배, 당류, 동물생산품, 돼지고기, 마류, 면사류, 밀,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섬유, 소, 수수, 양귀비, 유채, 유지류, 소, 종자기타, 콩, 팥유, 피마자, 호밀
3	59	가공곡물 기타, 고래, 누에, 당류, 동물생산품, 땅콩, 락검액즙, 무, 보리, 사료, 사탕수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양귀비, 양파, 옥수수, 원피, 유채, 종자 기타, 콩, 토마토, 파, 팥유, 포도, 해바라기
2	154	가공식물 기타, 가금류, 겨자, 계피, 과일 기타, 누에, 단감, 닭, 당나귀, 당류, 동물, 동물 기타, 동물생산품, 락검액즙, 면류, 모피류, 무, 밀, 살구, 시금치, 식품생산품, 아몬드, 올리브, 유지류, 유채, 음료수,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채소 기타, 치커리, 칠면조, 코르크류, 코코아, 파, 포도, 호밀, 화훼류
1	362	가공곡물 기타, 감귤, 감자, 거북, 겨자, 계피, 고추, 과일 기타, 국화, 귀리, 글라디올러스, 꿀, 나무, 낙농품, 난, 누에, 느타리, 단풍당, 담배, 당근, 당나귀,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두리안, 딸기,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르멜로, 말, 면류, 모피류, 밤, 배, 배추, 백합, 버찌, 베이커리, 보리, 복숭아, 사과, 사슴, 살구, 소고기, 수박, 수수, 시금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아스파라거스, 아편, 안개초, 양, 양송이, 양파, 영지, 오렌지, 오리, 오이, 옥수수, 올리브, 유지류, 유채, 음료수, 인삼, 자몽, 잣, 장미, 조,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채소 기타, 치커리, 칠면조, 칩, 카네이션, 카사바, 코르크류, 코코넛, 코코아, 콘플레이크, 콩, 토끼, 토마토, 톨립, 파, 파스타, 파인애플, 팥, 포도, 포포우, 호도, 호밀, 호박, 화훼류, 후추

표 6-6. FTA에서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FTA 수	품목 수	품 목
4	535	가공곡물 기타, 가금류, 감귤, 개, 거북, 겨자, 견사류, 계피, 고래, 곡물 기타, 귀리, 꿀, 누에, 단감, 닭, 담배, 당나귀, 당류, 동물,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돼지, 돼지고기,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밀, 면류, 면사류, 모피류, 무, 밀, 베이커리, 보리,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살구, 섬유, 소, 소고기, 수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아편, 양, 양귀비, 양모류, 양파, 오렌지, 옥수수, 올리브, 원피, 유지류, 유채, 음료수, 자라, 조,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초코렛, 치커리, 칠면조, 카사바, 커피, 코르크류, 코코아, 콘플레이크, 콩, 토끼, 토마토, 파, 파스타, 팥유, 포도, 피마자, 해바라기, 호밀, 화훼류, 후추

(표 6-6 계속)

FTA 수	품목 수	품 목
3	137	감귤, 귀리, 글라디올러스, 누에, 단풍당, 당나귀, 당류,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락검액즙, 면류, 밀, 배, 배추, 베이커리, 보리, 복숭아, 사과, 사슴, 사탕수수, 수박,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양, 양송이, 옥수수, 올리브, 완두, 원피, 유지류, 음료수, 조제 식료품, 종자 기타, 채소 기타, 칩, 커피, 코르크류, 콘플레이크, 콩, 토마토, 튜립, 파, 판지류, 포도, 화훼류
2	219	가공곡물 기타, 감귤, 감자, 겨자, 고구마, 고사리, 과실 기타, 귀리, 김치, 꿀, 나무, 낙농품, 난, 녹두, 누에, 당근, 당류, 대,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딸기,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르멜로, 면류, 모피류, 무, 밤, 배, 베이커리, 보리, 복숭아, 사과, 살구, 상치, 생강, 송이, 시금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아스파라거스, 안개초, 애버카도우, 양, 오이, 옥수수, 완두, 유기화합물, 유지류, 유채, 음료수, 인삼, 자몽, 낫, 조,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죽순, 차 기타, 채소 기타, 치커리, 코르크류, 코코넛, 콘플레이크, 콩, 토마토, 파, 팔, 포도, 포도당, 해바라기, 호도, 호밀, 홍차, 화훼류
1	247	가공곡물 기타, 감귤, 감자, 강낭콩, 겨자, 고래, 고사리, 고추, 과실 기타, 과아버, 국화, 귀리, 낙농품, 녹두, 느타리, 달걀, 담배, 당근, 당류, 동물 생산품, 돼지, 두리언, 딸기,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말, 면류, 목이, 무, 무화과, 바나나, 배추, 백합, 버찌, 보리, 복숭아, 사과, 사료, 사슴, 살구, 설육, 소, 소고기, 소시지, 송이, 수박, 수수,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양, 양송이, 양파, 영지, 오렌지, 오리, 오이, 옥수수, 완두, 유기화합물, 유지류, 유채, 은행, 음료수, 인삼, 자몽, 장미, 조제식료품, 참깨, 채소 기타, 칠면조, 칩, 카네이션, 카사바, 코르크류, 코코아, 콘플레이크, 콩, 토끼, 토란, 파인애플, 팔, 팥, 포도, 포도당, 포포우, 표고, 호박

3. 부가 기준의 적용과 분석

3.1. 수입 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

2003~05년에 품목별 평균 수입액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표 6-7>과 같음.

표 6-7. 품목별 수입액 분류: 2003~05년 평균

수입액(달러)	품목 수(개)	비중(%)
0	207	14
0~50만 미만	660	45
50~100만 미만	105	7
100만 이상	480	33
합 계	1,452	100

주: 품목은 HS 10단위 기준임.

자료: 농림부,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FTA에서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중 2003~05년에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은 <표 6-8>와 같음.

- 1) 모든 FTA에서 양허한 품목 가운데 중우의 실행 관세율이 89.1%로 가장 높고 소 수정란이 18%이며 나머지 품목은 3% 이하임.
- 2) FTA 3개에서는 양귀비가 8%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5% 이하임.
- 3) FTA 2개에서는 누에고치가 51%로 가장 높고, 아가리쿠스 버섯과 추출 올레오레진이 30%, 나머지 대부분은 9% 이하임.
- 4) FTA 1에서는 귀리가 55.8%로 가장 높고 슬로우 45%, 담배 40%, 버섯 30% 등이 포함됨.

표 6-8. FTA에서 곧바로 관세 철폐 및 수입이 없는 품목: 2003~05년

수입	FTA 수	곧바로 관세 철폐	
		품목 수	품 목
없음	4	33	가금류, 견사류, 닭, 당류, 동물 생산품, 마류, 면사류, 밀, 사탕수수, 소, 소고기, 원피, 유지류, 조, 종자 기타, 커피
	3	8	가공곡물 기타, 동물 생산품, 사탕수수, 식물 부산물, 양귀비, 옥수수
	2	38	가금류, 누에, 닭, 당나귀,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모피류, 밀, 유지류,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채소 기타, 치커리, 칠면조, 호밀, 화훼류
	1	59	거북, 계피, 과일 기타, 귀리, 글라디올러스, 꿀, 나무, 단풍당, 담배, 동물 생산품, 말, 밤, 배, 보리, 복숭아, 사슴, 소고기,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양, 영지, 오리, 유지류, 음료수, 잣, 조제식료품, 차 기타, 채소 기타, 칠면조, 크르크류, 코코아, 토끼, 튜립, 팥, 호도

FTA에서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중 2003~05년에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은 <표 6-9>과 같음.

- 1) FTA 4개에서 공통으로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중 실행 관세율이 높은 것은 중우(육우)로 89.1%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9% 이하임.
- 2) FTA 3개에서는 툴립 25%, 콩 20%로 높음.
- 3) FTA 2개에서는 귀리(종자용) 554.8%로 가장 높고 누에고치 51%, 유당 49.5% 순으로 관세율이 높음.
- 4) FTA 1개에서 최고 관세율은 조분으로 800.3%이고 귀리 554.8%, 단옥수수 370%, 매니옥 45% 순임.

표 6-9. FTA에서 5년 관세 철폐 및 수입이 없는 품목: 2003~05년

수입	FTA 수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 수	품 목
없음	4	90	가공곡물 기타, 가금류, 거북, 견사류, 계피, 꿀, 닭, 당나귀, 당류, 동물 생산품, 마류, 면사류, 모피류, 밀, 보리, 사탕수수, 소, 소고기, 식물 부산물, 양, 양귀비, 옥수수, 원피, 유지류, 음료수, 조, 조제 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치커리, 칠면조, 커피, 코르크류, 코코아, 호밀, 화훼류
	3	16	글라디올러스, 단풍당, 동물 기타, 배, 복숭아, 사슴,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올리브, 완두, 음료수, 조제 식료품, 콩, 튜립
	2	30	고사리, 과일 기타, 귀리, 나무, 낙농품, 누에,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모피류, 밤, 식물 생산품, 음료수, 잣, 채소 기타, 호도
	1	42	가공곡물 기타, 고래, 고사리, 과일 기타, 귀리, 낙농품, 담배, 동물 생산품, 딸기, 말, 보리, 소, 소시지, 양, 영지, 오리, 옥수수, 유채, 인삼, 조제 식료품, 채소 기타, 칠면조, 칩, 카사바, 토끼, 팽이

FTA에서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중 2003~05년 평균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은 <표 6-10>과 같음.

- 1) 모든 FTA에서 실행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종우(젓소)로 89.1%이며,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5% 이하임.
- 2) FTA 3개에서는 생사가 51.7%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대부분 8% 이하임.
- 3) FTA 2개에서 포도주스 45%, 소주와 브라질 너트 및 쪽과 30%, 채소 기타 27% 등이 포함됨.
- 4) FTA 1개는 수수(종자) 779.4%, 고추류(단고추) 270%, 라임 144%, 감귤주스 기타 54%, 기타 주스 50%, 배추 27% 등으로 구성됨.

표 6-10. FTA에서 곧바로 관세 철폐 및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 2003~05년

수입	FTA 수	곧바로 관세 철폐	
		품목 수	품 목
\$100만 이하	4	85	가금류, 견사류, 귀리, 누에, 닭, 담배, 동물 생산품, 돼지, 돼지고기, 마류, 면사류, 사료, 사탕무, 섬유, 소, 수수, 양귀비, 양모류, 원피, 유지류, 유채, 종자 기타, 커피, 팜유
	3	19	고래, 누에, 락검액즙, 사탕수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종자 기타, 팜유, 해바라기
	2	97	계피, 과실 기타, 누에, 단감, 닭, 동물,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락검액즙, 면류, 모피류, 무, 밀, 살구, 시금치, 식물 생산품, 아몬드, 올리브, 유지류, 유채, 음료수, 조제 식료품, 종자 기타, 채소 기타, 치커리, 코르크류, 코코아, 파, 포도, 화훼류
	1	222	가공곡물 기타, 감귤, 감자, 거북, 겨자, 계피, 고추, 과실 기타, 국화, 귀리, 나무, 난, 누에, 느타리, 단풍당, 담배, 당근, 당나귀,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르멜로, 면류, 모피류, 배, 배추, 백합, 버찌, 베이커리, 보리, 복숭아, 사과, 살구, 소고기, 수박, 수수, 시금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아스파라거스, 아편, 안개초, 양, 양송이, 영지, 오렌지, 오리, 오이, 옥수수, 유지류, 유채, 음료수, 인삼, 자몽, 장미, 조,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채소 기타, 치커리, 칠면조, 칩, 카네이션, 카사바, 코르크류, 코코넛, 코코아, 큰플레이크, 토끼, 토마토, 튜립, 파, 파스타, 파인애플, 팥, 포도, 포포우, 화훼류, 후추

FTA에서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중 2003~05년 평균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은 <표 6-11>과 같음.

- 1) 모든 FTA에 포함된 품목 중 중우(젓소) 관세율이 89.1%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8% 이하임.
- 2) FTA 3개에서는 파, 토마토가 30%, 배추 27%, 콩 20% 등으로 높음.
- 3) FTA 2개에서는 라임 144%, 주스와 상치 45%, 콩 27%, 무 30% 등이 포함됨.
- 4) FTA 1개에서는 매니옥 887%가 가장 높고 이눌린 800.3%, 수수(종자용) 779.4%, 녹두(종자) 607.5%, 고추류(단고추) 270%, 참깨 63%, 주스와 담배 40% 등 실행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됨.

표 6-11. FTA에서 5년 관세 철폐 및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 2003~05년

수입	FTA 수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 수	품 목
\$100만 이하	4	279	가공곡물 기타, 가금류, 감귤, 거북, 견사류, 계피, 고래, 귀리, 누에, 단감, 닭, 담배, 당류, 동물,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돼지, 돼지고기,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먼류, 면사류, 모피류, 밀, 베이커리, 보리,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살구, 섬유, 소, 수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아편, 양귀비, 양모류, 오렌지, 올리브, 원피, 유지류, 유채, 음료수, 조제 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초코렛, 치커리, 카사바, 커피, 코르크류, 코코아, 콘플레이크, 토끼, 파스타, 팜유, 포도, 해바라기, 화훼류, 후추
	3	78	감귤, 귀리, 누에, 단풍당, 당나귀,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락검액즙, 밀, 배추, 베이커리, 보리, 복숭아, 사과, 수박,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양, 옥수수, 올리브, 완두, 유지류, 음료수,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채소 기타, 칩, 코르크류, 콘플레이크, 콩, 토마토, 튜립, 파, 판지류, 포도
	2	128	가공곡물 기타, 감귤, 감자, 고구마, 과일 기타, 나무, 난, 녹두, 당근, 당류, 대,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땅콩, 라임, 레몬, 마르멜로, 먼류, 무, 배, 보리, 사과, 살구, 상치, 생강, 시금치,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아스파라거스, 안개초, 양, 오이, 옥수수, 완두, 유지류, 유채, 음료수, 인삼, 자몽, 조,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죽순, 치커리, 코르크류, 코코넛, 콘플레이크, 콩, 토마토, 파, 팥, 포도, 초도당, 해바라기, 홍차 화훼류
	1	130	가공곡물 기타, 가금류, 감귤, 감자, 겨자, 고사리, 고추, 과일 기타, 국화, 녹두, 느타리, 달걀, 담배, 당근, 당류, 동물 생산품, 돼지, 땅콩, 라임, 락검액즙, 무화과, 백합, 버찌, 사슴, 살구, 설육, 소시지, 송이, 소고기, 수수,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양, 양송이, 영지, 오렌지, 오리, 옥수수, 유채, 은행, 음료수, 인삼, 자몽, 장미, 조제 식료품, 참깨, 채소 기타, 칠면조, 칩, 카네이션, 카사바, 토란, 파인애플, 팥이, 포도, 포도당, 포포우, 표고

FTA에서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결정한 품목을 DFQF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다면 751개이고, 여기에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면 138개 품목을 지정할 수 있음<표 6-12>.

- 1) 수입 기준을 더 완화하여 100만 달러 이하의 수입 품목을 포함한다면 모두 561개 품목을 DFQF 대상 품목으로 삼을 수 있음.
- 2) 하나의 FTA에서라도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을 주요 기준으로 채택하면 이로 말미암은 DFQF 대상 품목 수는 138개, 561개, 751개 순으로 확대할 수 있음.¹⁵

표 6-12. FTA와 수입 기준 적용 후 품목 수 비교: 수입 없음.

FTA 수	곧바로 철폐	수입 없음	수입 \$100만 이하	합계
4	176	33	85	118
3	59	8	19	27
2	154	38	97	135
1	362	59	222	281
합계	751	138	423	561

FTA에서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으로 기준을 확대하면 최대 1,138개 품목을 DFQF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표 6-13>.

- 1) 이 가운데 수입이 없는 품목으로 DFQF 대상을 제한하면 178개가 되고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으로 부가 기준을 완화하면 총 792개 품목을 DFQF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 2) 곧 기준에 따라서 178개, 792개, 1,138개 순으로 DFQF 대상 품목 수를 확대할 수 있음.

¹⁵ 물론 어떤 FTA 수를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DFQF 품목 수와 그 확대는 다르게 될 것임.

표 6-13. FTA와 수입 기준 적용 후 품목 수 비교: 수입 \$100만 이하

FTA 수	5년 안에 철폐	수입 없음	수입 \$100만 이하	합계
4	535	90	278	368
3	137	16	78	94
2	219	30	128	158
1	247	42	130	172
합계	1,138	178	614	792

3.2.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은 품목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실품목 기준)을 가려내고 이를 다시 HS 10단위 기준으로 분류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통계자료에 나타난 품목 중심으로 농산물 및 관련 가공품을 분석하기로 함.

- 1) 국내 생산 관련 정보는 농림부의 농업생산액 자료, 『2005년 화훼 재배현황』, 『2006년 농림업 주요통계』, 『2006년 채소류 가공현황』 『2004년 과실류 가공현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2007년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등을 참조하여 분석에 활용함.

관세라인 백분위 10%와 20%에서 국내 생산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각각 135개와 434개로 나타남<표 6-14>.

- 1) 이는 관세 수준이 낮으면서도 국내 생산이 없거나 적은 품목이므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논리에 근거함.

FTA 양허 결과(4개 FTA에서 1개 이상)로 곧바로 또는 5년 안에 관세를 없애는 품목 가운데 국내 생산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각각 529개와 761개로 나타남<표 6-15>.

관세율이 이미 낮거나 FTA에서 관세철폐 대상 품목과 같은 핵심 기준에 국내 생산 관련 부가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관세라인의 최소 9%에서 최대 52%까지 DFQF 대상 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음.

표 6-14. 관세라인 백분위 10%와 20% 중 국내 생산이 미미한 품목

백분위	관세라인 수(개)	품 목
10%	135	가공곡물 기타, 감귤, 겨자, 견사류, 곡물 기타, 누에, 담배, 당류, 동물 생산품,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면사류, 모피류,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섬유, 소,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양, 양모류, 오렌지, 옥수수, 원피, 유지류, 유채,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커피, 코코아, 콩, 토마토, 팜유, 포도, 해바라기
20%	434	가공곡물 기타, 감귤, 거북, 겨자, 견사류, 계피, 고래, 고추, 곡물 기타, 과일 기타, 귀리, 나무, 낙농품, 누에, 단풍당, 담배, 당나귀, 당류, 대, 동물,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된장,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면류, 면사류, 모피류, 밀, 베이커리, 보리,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살구, 섬유, 소, 소고기,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아몬드, 아편, 양, 양귀비, 양모류, 오렌지, 옥수수, 올리브, 원피, 유기화합물, 유지류, 유채, 음료수, 인삼, 자라,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초코렛, 치커리, 칩, 카사바, 커피, 코르크류, 코코아, 콩, 토마토, 파스타, 판지류, 팜유, 포도, 포도당, 해바라기, 화훼류, 후추

주: HS 10단위 기준에다 실품목 이름을 부여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여기에서 실품목으로서 ‘감귤’은 ‘감귤류의 껍질(0814001000)’을 말함. 감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감귤류의 껍질’에 대한 정확한 생산 통계가 없고 수입실적(2003~05년 평균 12,000달러)이 있어 이를 국내 생산이 미미한 것으로 간주함.

표 6-15. FTA 관세 철폐대상 품목 중 국내 생산이 미미한 품목

기준	관세라인 수(개)	품 목
곧바로 관세철폐	529	가공곡물 기타, 감귤, 거북, 겨자, 견사류, 계피, 고래, 곡물 기타, 과실 기타, 귀리, 나무, 낙농품, 누에, 단풍당, 담배, 당나귀, 당류, 동물,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두리언, 딸기,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마르멜로, 말, 면류, 면사류, 모피류, 밀, 배, 버찌, 베이커리, 보리, 사과,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살구, 섬유, 소, 소고기, 수박,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아편, 양, 양귀비, 양모류, 오렌지, 옥수수, 올리브, 원피, 유지류, 유채, 음료수, 인삼, 조제 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채소 기타, 치커리, 칠면조, 카사바, 커피, 코르크류, 코코넛, 코코아, 콩, 토마토, 파, 파스타, 파인애플, 팜유, 포도, 포포우, 해바라기, 화훼류, 후추
5년 내 관세철폐	761	가공곡물 기타, 감귤, 감자, 거북, 겨자, 견사류, 계피, 고구마, 고래, 고사리, 고추, 곡물 기타, 과실 기타, 과아버, 귀리, 나무, 낙농품, 녹두, 누에, 단풍당, 담배, 당나귀, 당류, 대, 동물, 동물 기타, 동물 생산품, 두리언, 딸기, 땅콩, 라임, 락검액즙, 레몬, 마류, 마르멜로, 말, 면류, 면사류, 모피류, 무화과, 밀, 바나나, 배, 버찌, 베이커리, 보리, 복숭아, 사과, 사료, 사탕무, 사탕수수, 살구, 생강, 설육, 섬유, 소, 소시지, 소고기, 수박, 식물 부산물, 식물 생산품, 식물 조제품, 아몬드, 아스파라거스, 아편, 에버카도우, 양, 양귀비, 양모류, 오렌지, 오이, 옥수수, 올리브, 완두, 원피, 유기화합물, 유지류, 유채, 음료수, 인삼, 자라, 자몽, 조제식료품, 종자 기타, 차 기타, 참깨, 채소 기타, 초코렛, 치커리, 칩, 카사바, 커피, 코르크류, 코코아, 콩, 토란, 토마토, 파, 파스타, 파인애플, 판지류, 팜유, 포도, 포도당, 해바라기, 홍차, 화훼류, 후추

3.3. LDC 수출이 미미한 품목

2000~05년에 LDC가 연평균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품목은 원료, 면린트, 비식용 산 동물, 커피, 담배, 참깨 등 11개 품목임<표 6-16>.

1) 이러한 품목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임.

우리나라가 LDC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LDC 수출 품목 중 상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면, 커피, 담배, 참깨, 콩, 아라비아검 등임.

- 1) LDC의 수출 역량이 큰 이러한 품목 가운데 담배, 참깨, 콩 같은 것은 국내 산 농산물과 경쟁하는 것임.

표 6-16. LDC의 주요 수출 농산물

순위	품 목	2000~05년 평균 (\$100만)
1	원료(crude materials)	2,205.5
2	면린트	705.8
3	비 식용 산 동물	691.4
4	커피(볶지 않은 것)	484.3
5	담배(제조하지 않은 것)	298.0
6	원당, 설탕, 시럽	149.2
7	참깨	138.6
8	양	108.9
9	마른 콩	105.5
10	차	101.1
11	바닐라	100.0

주: FAO가 제시한 수출 농산물 품목 수는 모두 483개이며 총수출액은 2000~05년 평균 68억 4,924만 달러임.

자료: FAOSTAT(<http://faostat.fao.org/>)

LDC의 수출 규모가 10만 달러 미만인 품목은 전체 483개 품목(FAO 자료 기준) 가운데 151개로 31%가량을 차지함<표 6-17>.

- 1) 이러한 품목들은 이미 상당히 개방된 선진국 시장에 크게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음.¹⁶

¹⁶ 품목들을 HS 10단위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서는 핵심 기준 결과와 비교하지 않기로 함.

표 6-17. LDC 수출 규모가 미미한 주요 농산물

수출 규모(달러)	주요 품목
10,000 미만	메밀가루, 누에고치, 배합사료, 농축 감귤주스, 유장치즈, 치즈(염소의 것), 올리브
10,000~50,000	카사바, 호도(미탈각), 소고기(건조), 자몽, 고구마, 단풍당, 카세인, 아스파라거스, 보리정맥, 호밀, 무화과, 모시, 유장(신선), 달걀(건조), 레몬주스, 치즈(양의 것)
50,000~100,000	돼지고기(조제저장처리), 전분(감자, 밀), 스위트콩(조제저장처리), 보릿가루, 포도주스, 식용설육(돼지의 것), 올리브기름, 감귤류 주스, 고구마, 복숭아, 자두, 유장(건조), 살구, 사탕수수, 사과 주스(농축), 귀리

자료: FAOSTAT(<http://faostat.fao.org/>)

제 7 장

요약 및 결론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은 LDC 세계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시장이나, 2000년대 들어 그 비중은 감소하였음<표 7-1>.

- 1) 최대 수입국은 EU15(15개국)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미국 23%, 중국 18% 순임.
- 2) LDC 수출시장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4.9%로 정점을 이룬 후 내림세를 나타냄.

표 7-1. LDC 수출 10대 시장 점유율

순위	국 가	점유율(%)		
		1995년	2000년	2004년
1	EU15(15개국)	39.6	31.1	29.2
2	미국	20.5	26.4	22.7
3	중국	3.5	10.7	17.8
4	태국	3.9	3.7	5.0
5	일본	6.5	3.3	4.2
6	인도	2.7	2.5	2.9
7	대만	1.7	1.8	2.9
8	한국	2.8	4.9	1.8
9	캐나다	0.9	0.8	1.5
10	싱가포르	2.8	1.6	1.2

자료: WTO(2006c)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총 87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LDC 무관세·무쿼터(DFQF) 특혜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산물은 22개 품목임.

LDC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농산물 규모는 2004~06년에 평균 3,603만 달러임.

- 1) 50개 LDC 가운데 28개국에 수출하였고 최대 수출국은 수단으로 전체의 33% 가량을 차지함.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LDC의 주요 수출 품목은 참깨, 잎담배, 기타 면, 기타 콩 등으로 참깨와 잎담배를 제외한 품목들은 국내 농산물과 경쟁하는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국내 생산량의 2.5~4배 정도 수입하는 참깨는 LDC로부터 수입물량만으로도 TRQ 수준(6,731톤) 이상을 기록함.

- 1) TRQ를 초과하는 물량에 630%의 높은 쿼터 밖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임.
- 2) 쿼터 밖 관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LDC로부터 수입단가는 2004~06년에 평균 kg 당 7,000원 가량인데 이는 같은 기간에 평균 10,000원 가량인 국내 생산자가격보다 낮은 수준임.
- 3) 수입산과 국내산간 품질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수입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다는 점과 이미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참깨를 DFQF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유의해야 함을 나타냄.
- 4) 참깨는 LDC가 가치 기준(2000~05년 평균 1억 3,860만 달러)으로 7대 수출 농산물에 속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잎담배는 이미 특혜무역 대상이고 나머지 수입 품목들 대부분은 국내산과 경쟁하지 않아 DFQF 추가 공여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임.

우리나라가 LDC에 무관세 특혜조치를 공여한 농산물은 모두 32개(HS 6단위 기준)로 커피, 면실, 조유, 잎담배, 양모 등임.

- 1) WTO가 권고한 116개 품목 중 87개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산물은 22개 품목임.

추가로 DFQF 공여 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준과 이를 보완하고 확충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부가 기준을 정함.¹⁷

- 1) 핵심 기준은 ① 이미 실행 관세율이 낮은 품목과 ② FTA를 통해 단기간에 관세를 없애거나 낮은 관세율로 양허한 품목임.
- 2) 핵심 기준 후 적용할 부가 기준은 ① 수입 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 ②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은 품목, ③ LDC가 수출하지 않는 품목임.

관세라인 백분위 20% 또는 실행 관세율 8% 이하인 품목 기준 아래 589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영세율 제외) 또는 전체 관세라인의 41%를 DFQF 공여 대상 품목으로 고려할 수 있음.¹⁸

- 1) 이 가운데 2003~05년에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은 80개(전체의 6%)이고, 수입 규모가 평균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은 388개(27%)임.
- 2) 국내 생산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434개(22%)임.
- 3) LDC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참깨, 차 등임.

우리나라가 체결한 4개 FTA(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에서 중 적어도 1개 이상에서 곧바로 또는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양허한 품목은 각각 751개(전체의 52%)와 1,138개(전체의 78%)임.

- 1) 이 가운데 2003~05년에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은 각각 138개(10%)와 178

17 선정된 핵심 기준과 부가 기준 자체는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을 나타냄.

18 양허 관세율 기준으로는 13.1% 이하인 321개(22%) 품목임. 품목과 관세 분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6장에 제시함.

- 개(12%)이고,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은 각각 561개(39%) 와 792개(55%) 임.
- 2) 국내 생산이 없거나 생산수준이 미미한 품목은 각각 529개(36%)와 761개(52%)임.
 - 3)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LDC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참깨, 차 등임.

핵심 기준과 부가 기준을 활용하여 LDC에 대한 DFQF 양허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면 전체 관세라인(10단위 기준) 중 최소 6%에서 최대 78%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요 약

이 연구는 특혜무역 조치로써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FQF) 공여의 확대 방안을 다루고 있다.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LDC에 대한 DFQF 공여 대상 품목을 선정하려고 핵심 기준과 부가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핵심 기준은 ① 이미 실행 관세율이 낮은 품목과 ② FTA를 통해 단기간에 관세를 없애거나 낮은 관세율로 양허한 품목이다. 핵심 기준 후 적용한 부가 기준은 ① 수입 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 ②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은 품목, ③ LDC가 수출하지 않는 품목이다. 이를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관세라인(10단위 기준) 중 최소 6%에서 최대 78%까지 LDC에 대한 DFQF 공여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Ways to Expand Duty-Free Quota-Free Market Access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ways for Korea to expand the provision of preferential market access to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LDCs). Two criteria have been adopted to minimize potential adverse effects on domestic farm sectors. Primary criteria include identifying tariff lines with very low applied tariff rates and sorting out commodities subject to either low bounded or being eliminated as agreed upon bilateral trad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other trading partners. To refine the results from applying primary criteria, the following supplementary criteria have been explored: imports with low market shares, commodities which are not or minimally produced in the country and commodities which are not exported by the LDCs to a large extent. Analytical results show Korea may designate up to 78 percent of its tariff lines as duty-free market access for the LDCs.

Researchers: Lim, Song-Soo and Shin, You-Seon

Research period: 2007. 7. - 2007. 11.

E-mail address: songsoo@krei.re.kr

표 차 례

제2장 LDC 농업구조와 무역동향

표 2- 1. LDC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6
표 2- 2. LDC 농업과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비교	8
표 2- 3. LDC의 전체 노동인구에서 농업의 비중	10
표 2- 4. LDC의 농업생산 추이	12
표 2- 5. LDC의 식량생산 추이	14
표 2- 6. LDC의 농산물 주요 품목 가격지수	16
표 2- 7. LDC의 농업노동 인구 추이	16
표 2- 8. LDC의 농업노동 인구와 농업노동 생산성	17
표 2- 9. LDC의 농지이용 현황	19
표 2-10. LDC의 농지 생산성	21
표 2-11. 한국-LDC간 농산물 수입 추이	23
표 2-12. 국가별 수입 추이	25
표 2-13. 주요 품목별 수출국 추이	29
표 2-14.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LDC가 차지하는 비중	31
표 2-15. 참깨의 국내생산 현황과 LDC로부터 수입 비교	33

제3장 LDC 특혜 무역 조치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표 3- 1. 주요 선진국의 관세라인 수	37
표 3- 2. 방글라데시와 네팔의 수출 집중 현상	37

제4장 주요국의 특혜무역제도

표 4- 1. EBA 협정 아래 쌀과 설탕의 TRQ 설정	42
표 4- 2. 주요국의 LDC 특별무역 조치 비교: 2003년	46
표 4- 3. QUAD 국가에서 LDC로부터 상품 수입 비중	50

제5장 우리나라의 특혜무역제도

표 5- 1. 우리나라가 부여한 특혜 관세라인과 관세율	52
표 5- 2. 우리나라가 부여한 특혜대상 농산물과 관세율	53
표 5- 3. WTO 권고 품목 중 특혜대상에서 배제된 품목	56
표 5- 4. 주요국의 LDC 수입 비중(%): 2003년	57

제6장 우리나라의 특혜무역제도 확대 영향

표 6- 1. 관세라인 백분위 기준별 분석 결과	62
표 6-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현황	64
표 6- 3. 우리나라의 FTA 관세율 양허결과 비교	65
표 6- 4. 관세 철폐 시한별 FTA 및 품목 수 비교	66
표 6- 5. FTA에서 곧바로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67
표 6- 6. FTA에서 5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한 품목	67
표 6- 7. 품목별 수입액 분류: 2003~05년 평균	69
표 6- 8. FTA에서 곧바로 관세 철폐 및 수입이 없는 품목	70
표 6- 9. FTA에서 5년 관세 철폐 및 수입이 없는 품목	71
표 6-10. FTA에서 곧바로 관세 철폐 및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 ...	72
표 6-11. FTA에서 5년 관세 철폐 및 수입이 100만 달러 이하인 품목	73
표 6-12. FTA와 수입 기준 적용 후 품목 수 비교: 수입 없음	74
표 6-13. FTA와 수입 기준 적용 후 품목 수 비교: 수입 100만\$ 이하	75
표 6-14. 관세라인 백분위 10%와 20% 중 국내 생산이 미미한 품목	76
표 6-15. FTA 관세 철폐대상 품목 중 국내 생산이 미미한 품목	77
표 6-16. LDC의 주요 수출 농산물	78
표 6-17. LDC 수출 규모가 미미한 주요 농산물	79

제7장 요약 및 결론

표 7- 1. LDC 수출 10대 시장 점유율	80
---------------------------------	----

그림 차례

제2장 LDC 농업구조와 무역동향

그림 2-1. LDC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2004~07년 7월	24
그림 2-2. 우리나라가 LDC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별 비중	29
그림 2-3. 참깨의 수입량 추이	32
그림 2-4. 참깨의 수입액 추이	32
그림 2-5. 잎담배의 수입량 추이	34
그림 2-6. 잎담배의 수입액 추이	34

참고 문헌

- 농림부. 2007. “농림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 정재호. 2007.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 재정포럼 제132호: 46-62.
- Bhatt, Shiv. 2006. “Demystifying Hong Kong Duty Free Quota Free Market Access Decision. South Asia Watch on Trade”, Economics & Environment.
- Bora, B., L. Cernat, and A. Turrini. 2002. “Duty and Quota-Free Access for LDCs: Further Evidence from CGE Modelling”. Policy Issues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Study Series No. 14, UNCTAD/ITCD/TAB?15.
- Nhara, Anselmo. 2006. “The Impact of WTO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Trade & Development Studies Centre Issue No. 36.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USTR]. 2007. “2007 Comprehensive Report on U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Toward Sub-Saharan Africa and Implementation of the Ag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http://www.ustr.gov/assets/Trade_Development/Preference_Programs/AGOA/asset_upload_file762_11294.pdf>.
- Tabari, John. 2006. “Market Acces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The Hong Kong Effect. Briefing Paper SAFIT 1/2006, CUTS International”. <<http://www.cuts-international.org/pdf/SAFIT-1-2006.pdf>>.
- UNCTAD. 2006.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Handbook on the Scheme of Japan”. <http://www.unctad.org/en/docs/itcdtsbmisc42rev3_en.pdf>.
- Wainio, J., S. Shapouri, M. Trueblood, and P. Gibson. 2005. “Agricultural Trade Preferenc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USDA/ERS Report No. 6”.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err6/err6.pdf>>.
- WTO. 2006a. “The Mid-Term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cade 2001-2010”.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un.org/special-rep/ohrls/ldc/MTR/WTOEnglish.pdf>>.
- _____. 2006b.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the Least-Developed Countries”. Note by Secretariat, WT/COMTD/LDC/W/39.

- _____. 2006c. Market Access Issues Related to Products of Export Interest Originating from Least-Developed Countries. WT/COMTD/LDC/W/38.
- _____. 2003. "Market Access Issues Related to Products of Export Interest Originating from Least-Developed Countries". Sub-Committee on Least-Developed Countries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WTO, September 29, 2003.

C2007-47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부여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1.

발 행 2007. 11.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http://www.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